

월간

재정포럼

2022. August_Vol.314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8

권두칼럼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재정 | 장용성

현안분석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 박노욱

특집

2022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배정훈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 정다운

정책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 소비와 인구구성을 중심으로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논의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재정 | 장용성 02

현안분석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08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 박노욱

특집

2022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배정훈 32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 정다운 38

정책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53

: 소비와 인구구성을 중심으로

| 고창수·배진수·조희명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57

| 김우현·김대환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 60

| 권성준·윤정환

공공기관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65

| 하세정·박한준·조윤직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논의 외 70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재정



장용성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대된 유동성과의 전쟁으로 공급망 충격이 더해지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물가가 크게 치솟았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은 1970년대 OPEC 감산에 따른 유가 충격 이후 거의 40년 가까이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지내왔기에 정책당국과 시장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산정 방식과 가격정책에 기인한 한국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2년 5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이 8.6%, 유로존은 8.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4%로서 비교적 선방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 물건들을 사보면 물가 상승률이 과연 5%대에 불과할까 의아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대폭 상승한 집값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공식 물가 통계로 자주 사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구입 비중이 큰 약 460여 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들로 구성된 장바구니물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내가 구입하는 물건들이 공식 지수의 장바구니물가와 다르면 체감하는 물가는 공식 물가와 다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물건 가격이 덜 오른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의 차이 및 가격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비 비중이 9.8%인 데 반해 미국의 경우 32%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이 적은 이유는 자가주거비를 포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주거비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월세를 주고 거주할 때 드는 비용으로서 대개 집값 상승에 비례해서 움직인다.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리가 공존한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내가 소유하고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의 가격 상승은 자산가치의 상승이니 생활비 인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보유한 다른 내구재(자동차, 세탁기 등)의 가격 상승도 생활비 상승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꾸준히 예금을 모아온 가구나 지금 전세로 살지만 내 집을 마련하려고 현금을 모아둔 가구를 생각해 보자. 이들 가계의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거나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좌절된다면, 집값 상승이 실제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후생을 감소시킨 것이다. 따라서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비중을 포함하고 집값 및 전월세값의 상승을 반영해 물가상승률을 다시 계산하면 공식 지표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약 1.6%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공식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사용하는 전월세 가격의 변동이 실제 시장의 가격 변동보다 작다는 지적이 있다. 전월세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통계로 경제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전세가격 지수를 사용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가로 0.1%포인트 더 올라간다. 주거비와 관련된 위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한 물가 상승률은 공식 물가 상승률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져 7%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료나 도시가스비와 같은 공공요금은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를 공급하는 공공기관들의 적자를 유발한다. 이러한 공공부문 적자는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국민들이 부담할 세금이다. 누진적 조세 제도하에서 서민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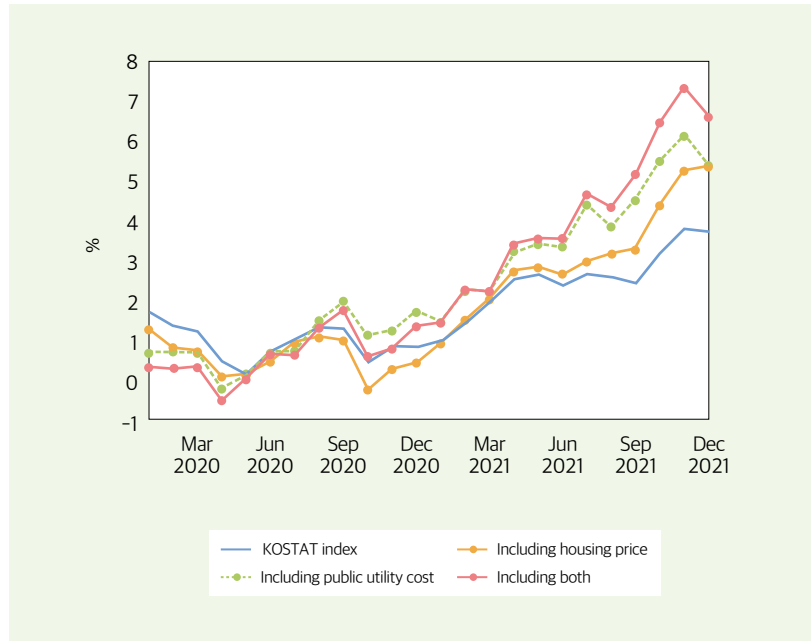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와 집값 및
 전월세값의 상승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을
 추정하면 공식 지표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약 1.6%포인트
 추가 상승한다.**

.....
**우리나라의 주거비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잠재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식통계보다 훨씬 높은
 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게 저렴한 전기료와 가스비를 제공하는 것도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물가 상승요인을 미래로 일단 떠넘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금년 1분기에만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7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을 보전할 만큼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을 바로 인상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 전제하에 물가지수를 다시 계산해보면 물가 상승률은 추가로 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세 요인을 다 고려해서 계산한 가상의 잠재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식통계보다 훨씬 높은 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 뿐더러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협 또한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림 1]은 위 세 가지 요인을 반영해 추정한 물가 상승률로서 이미 2021년 12월에 7%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식지수와 보정지수 비교




출처: 서재용·장용성,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잠재적 괴리요인」, 『경제학연구』, 제70권 제2호, 2022

다양한 정치·경제적 고려로 인해 쉽지 않은 자가주거비 반영

OECD 38개 회원국 중 20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가주거비를 반영한 물가지수를 공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고려로 인해 쉽지 않아 보인다. 첫째, 주거비가 반영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채택하게 되면 이미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다. 둘째, 지난 몇년간 인상속도가 다소 빨랐다고 지적되는 최저임금에도 추가적 인상요인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공공부문 재정을 위한 물가지수 관리 개요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역사적으로 양면성을 보여왔다. 한편으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를 억제하려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국채의 실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사실이다. 물가지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도 준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요금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수반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실질적으로도 비용에 대응하여 수요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소모되는 비용을 더 크게 만든다. 연료비 연동제와 같은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보다 정확한 물가 상승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통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수반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물가지수는
정부 정책 수립과
민간부문 경제활동에도
준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박노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park@kipf.re.kr)

I.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 논의 필요성

고령화 추세 지속, 팬데믹 대응 지출 확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 미래 기후위험 대응 관련 재정 소요 증가, 국가채무를 통한 재원조달 추세 지속 등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지출과 수입 간의 구조적인 괴리가 발생하여 ‘재정적자 100조원, 국가채무¹⁾ 1,000조원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재정구조 자체의 변화가 없이는 현재의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2020. 9.)에 따르면, 현행 조세 및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규모가 2022년 GDP 대비 50.1%에서 2070년 1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정적자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합의의 상실로 인해 재정운용 정상화 계획 자체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표 1> 연도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차 추경)	2022년 (1차 추경)
관리재정수지	▲18.5	▲10.6	▲54.4	▲112.0	▲126.6	▲110.8
국가채무	660.2	680.5	723.2	846.6	965.3	1,075.7

출처: e-나라지표 및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1)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국내 발표자료에서 활용하는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로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채무와 부채는 혼용하여 활용한다. 개념적으로는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이고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서 도출된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국가가 상환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한다.

<표 2> 주요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추세(2022~2027)

(단위: GDP 대비 비율,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한국	-1.6	-1.1	-1.1	-1.2	-1.1	-1.2
아일랜드	-1.4	-0.6	-0.4	0.0	0.0	0.0
덴마크	0.8	0.6	0.3	0.0	0.0	0.0
독일	-3.3	-0.7	-0.1	0.3	0.4	0.4
스위스	-0.9	-0.3	-0.1	0.0	0.0	0.0
스웨덴	-0.7	0.0	0.3	0.3	0.3	0.3

출처: IMF Fiscal Monitor(April 2022)에서 발췌

예를 들어, 모범적인 재정정책 틀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2022년부터 재정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5년경에는 균형 또는 흑자로 재정수지의 정상화가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지속적인 재정적자 발생이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수지의 정상화 계획은 찾기 어렵다. 이는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합의 미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중요한 재정혁신 과제 중 하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의 틀(fiscal policy framework) 혁신과 실효성 있는 운용이다. 특히 준칙 기반의 재정정책(rule-base fiscal policy)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범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고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재정구조의 근본적 혁신 자체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준칙의 역할과 효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경기대응적 재정정책 기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범국가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도 있다.

준칙 기반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적 충격 이후에 광범위하게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초반 유럽 내에서의 재정준칙 확산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을 1992년에 체결하면서 이루어졌으며, 유럽연합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명시화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확산은, 신흥 부국 개별 국가의 재정준칙 채택과 저개발국가의 초국가적인 재정준칙 수립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신흥 부국의 재정준칙 채택은 경제 위기로 인해 재정구조조정에 대한 확약

재정준칙의 효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기대응적 재정정책 기조 확보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범국가적 합의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측면도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재정준칙을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운용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commitment) 수단으로 이루어지거나(콜롬비아, 브라질), 이루어진 재정개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루어지거나(멕시코, 폴란드), 자연자원의 가격 변화에 동행하는 재정지출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칠레, 러시아, 몽골).

2022년 1월 기준 재정준칙을 수립한 국가는 105개국이고,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재정준칙을 운영 중이며, 신흥 부국과 저개발국가에서도 국제기구의 지원 속에 확산되고 있다.²⁾ 재정준칙은 개별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인(supranational) 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초국가적인 재정준칙에 속한 국가도 53개국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별 국가의 재정준칙이 보완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운용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의 도입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차례의 재정준칙 도입 시도가 있었다. 첫 번째는, 2016년에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재정건전화법」이다. 동 법안에 GDP 대비 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3%가 포함되어 있다. 동 법안은 국회의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반대 속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 번째 시도는 2020년 12월에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 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 준칙이 포함되었다. 동 법안에 대해서 여당은 준칙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으며, 야당은 준칙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동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였다. 세 번째 시도가 2022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50% 중반 수준, 연간 재정적자는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운용 기조를 발표하였다.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과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곱셈식 방식이 아닌 수지 및 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며, 준칙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 후 바로 적용하겠으며,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부 자체적으로 재정준칙을 감안하여 2023년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2020년 12월에 제안된 재정준칙에 근거한 기준선 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관련 쟁점을 도출한다.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정

2)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IMF, 2022)의 데이터 활용

책과제를 논하고, 신정부가 추진할 재정준칙안 도출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재정준칙안 진단과 쟁점

1. 2020년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재정준칙안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재정준칙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준칙이 결합된 산식 형태로 재정준칙이 표현되었다.

$$(\text{국가채무비율}/60\%) \cdot (\text{통합재정수지비율}/-3\%) \leq 1$$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은 GDP 대비 비율임

국가채무의 연성 앵커(soft anchor)와 재정수지의 연성 목표가 포함된 형태이다. 국가채무 수준이 60%를 초과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시작해야 한다. 다만 상기 산식에 따르면 60% 이상의 국가채무 수준도 허용가능하며, 재정수지는 폭을 축소하지만 계속 적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성 앵커와 연성 목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재정준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상황도 명시하고 있다. 재정준칙의 양적 기준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②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대규모 재해)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③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적용개시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 재정준칙안에는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장치가 없으며, 재정준칙에서 벗어날 경우 수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2세대 재정준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정준칙의 준

2020년 12월에 제안된 재정준칙안에는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장치가 없으며, 재정준칙에서 벗어날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IMF(2021)는 우리나라 재정준칙하의 장기재정전망을 2040년대 초반에 국가채무 수준이 75%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감소추세로 전환하지만, 205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 강제 장치의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안은 앵커와 목표 자체가 연성이라는 점에도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준수 강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안을 기반으로 기준선 재정전망을 시도한 IMF(2021)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재정준칙안의 한계와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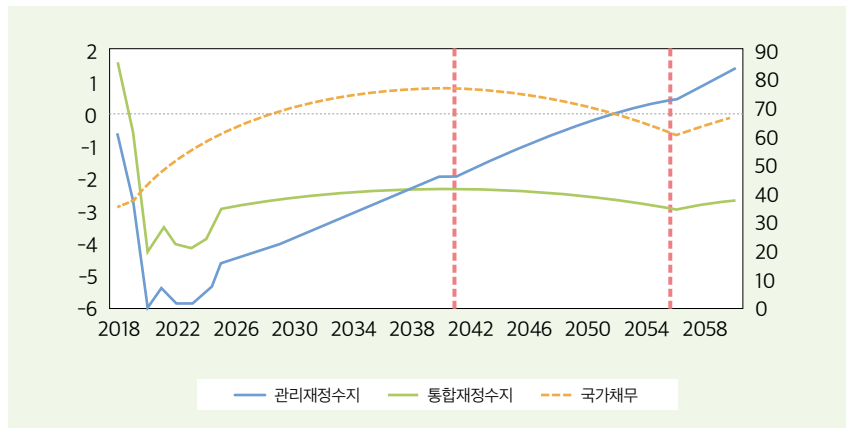
2. 재정준칙안하의 기준선 전망과 쟁점

IMF(2021)는 우리나라 재정준칙하의 장기재정을 [그림 1]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2040년대 초반에 국가채무 수준이 75%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감소추세로 전환하지만, 205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증가하며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2030년까지의 전망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치를 활용하였으며, 2030년 이후의 전망은 기획재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사용된 가정을 활용하였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3%, 2030년대 1.3%, 2040년대 0.8%, 2050년대 0.5%로 가정하였다. 사회보험 재정수지는 2019년 2.2% 흑자에서 2040년대 초

[그림 1] 2020년 재정준칙안(2020. 12.)하의 장기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IMF(2021) p. 13의 그래프에 시기 구분을 위한 적색선 추가

반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 적자가 4.1%에 이른다. 사회보험 적자금은 2057년에 고갈되고, 이후에는 국채로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인플레이션은 연간 1%로 가정하고, 재정준칙에서 허용하는 재정적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가정하에 전망한다. 재정준칙이 허용하는 재정적자 한도를 지키는 수준에서도 관리재정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가정하에서의 국가채무 기준선 전망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2022년~2040년대 초반으로서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이다. 사회보험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바로 국가채무 연간증가액과 동일하다. 사회보험수지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적자를 누적하는 시기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 연간증가액보다는 작은 시기이다.

두 번째는 2040년대 초반에서 2050년대 후반으로서, 국가채무비율이 완만히 감소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보험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험 적립금으로 적자를 충당하는 시기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바로 국가채무 연간증가액과 동일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 연간증가액보다 큰 시기이다. 국가채무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수지 적자를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임시방편적 재원조달이 배후에서는 작동하는 시기이다.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보험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지출혁신을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2050년대 후반 이후로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재정개혁 없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시기이다. 연간 사회보험수지는 적자이고, 사회보험 적립금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사회보험수지 적자를 충당해왔던 재원인 적립금이 고갈되어, 국가채무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바로 국가채무 연간증가액과 동일한 시기이다.

재정준칙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 기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에서 2040년 초반에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GDP 대비 2%대 수준의 적자로 개선해야 한다. 2030년대 후반

2050년대 후반 이후는 사회보험수지 적자를 충당해왔던 재원인 적립금이 고갈되어 국가채무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재정개혁 없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정준칙안에
기반한 국가채무 기준선
전망은 상당한 수준의
재량지출 축소 또는
국민부담 증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시사한다.**

까지는 사회보험수지가 흑자이므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에서 2040년 사이에 연평균 3.3% 적자를 유지하고,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40년대 초반에서 2050년대 후반에는 사회보험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므로, 관리재정수지는 더욱 긴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 폭을 축소해 나가서, 2050년대 초반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시켜 사회보험수지 적자를 일부 충당해야 한다. 205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국가채무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사회보험 적립금 고갈로 인해 사회보험을 포함한 재정개혁이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시기로 접어든다.

이러한 재정준칙안에 기반한 국가채무 기준선 전망은, 상당한 수준의 재량지출 축소 또는 국민부담 증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의 연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 수준이 5.8%인데, 2050년대 초반에는 흑자로 전환시켜야 하고 2060년부터는 연평균 1.4% 이상의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재정준칙안은 통합재정수지 준칙을 활용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 적립금을 통해 2050년대 후반까지의 재정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개혁을 지연시켜서 2050년대 후반 이후의 충격이 커지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3. 2020년 재정준칙안의 한계

첫째, 재정준칙안에 활용되고 있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준칙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D1 기준의 국가채무와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준칙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D1 기준의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국제비교가 가능한 D2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그동안 누적된 적립금으로 인해 적립금 고갈 시기까지는 적자를 보전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재정준칙에 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게 되면, 필요한 사회보험 개혁이나 재정구조 개혁을 지연시키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IMF(2021)의 기준선 전망과 같이, 적립금 고갈 시점까지는 근본적 재정개혁 없이 사회보험 적립금을 고갈해 나가면서 재정준칙을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금 고갈 이후에 닥쳐올 충격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재정준칙안에 활용되고 있는 목표의 성격 관련 쟁점이다.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목표가 모두 연성 목표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정준칙이 현실에서의 의사결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형태의 목표가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준칙은 연성 목표로서, 수식상으로는 국가채무 수준이 60% 이상 높아져도 적자는 계속 누적될 수 있다. 산술적으로는 140%의 국가채무 수준에서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29% 이하인 한에는 계속 누적될 수 있다. 재정준칙이 국가채무의 누적을 방지하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재정준칙은 중장기적 목표로서 국가채무 수준을 설정하고, 연간 재정운용 목표로서 재정수지나 지출수지를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재정준칙안은 국가채무 앵커로서 60%를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 목표로 3% 적자한도를 설정하는 형태이다. 연간 재정운용 목표가 상당히 약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 재정의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재정수지 또는 일정 수준의 흑자를 연간 또는 중기 재정운용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안에는 국가채무 앵커로의 복귀를 위해 필요한 재정수지나 지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적어도 재정준칙 도입 시점에서의 중기적 목표는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준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재정준칙 예외상황 적용, 재정준칙 준수 강제 등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제2세대 재정준칙에 있어서의 핵심은 독립적 재정기구를 통한 재정준칙 모니터링 및 준수 강제기제 강화이다. 특히 재정준칙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재정운용이나 재정준칙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 재정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향후 추진될 재정준칙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요소들이 적절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여력을 고려한 부채 한도 준칙, 부적절한 부채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적 준칙, 부채와 재정수지 수준이 한도를 벗어났을 경우 정상적 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한 조정 준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준칙의 준수와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 재정기구가 필요하다.

2020년 재정준칙안은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합의가 약화되고 재정운용의 정

**2020년 재정준칙안은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합의가 약화되고
재정운용 정상화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궁여지책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다.**

2020년 재정준칙안은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운용의 준거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재정혁신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역설적인 안이다.

상화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궁여지책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다. 새롭게 추진될 재정준칙은 범정부적 합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재정혁신을 견인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III.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

2020년 재정준칙안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도출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전망에 기반하여 지속가능성 제고와 동시에 경기대응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면서도, 현실성 있게 작동이 가능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1. 중기적 재정혁신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한 재정준칙 설정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차적인 요소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 및 지역연금 재정을 비롯하여, 다른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사회보험에서의 적자는 궁극적으로 일반 재정에서의 보조로 충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 전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암묵적 부채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0월 재정준칙안 이전에는 이 연결고리에 대해, 정부는 명시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양자의 이슈는 분리된 것이며, 각각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논의되었다.

2020년 재정준칙안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아니라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준칙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정부가 사회보험을 포함한 재정수지를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결과를 낳았다. 다만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전향적인 입장 전환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안은 필요한 사회보험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않고도 2050년대 후반까지는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면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재정준칙안 때문에 사회보험 재정개혁이 지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20년 재정준칙안은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운용의 준거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재정혁신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역설적인 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 정당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속력 있는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더불어 일반 재정도 재정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에는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다루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같이 사회보험과 일반 재정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정 정상화 목표를 준칙으로 설정하여 재정개혁을 촉진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안정적 사회보장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사회보험 재정적자를 암묵적으로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보조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보험 자체로서 안정화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와 재정의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재정준칙안과 같이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준칙으로 활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장기적 위협인 사회보험 재정문제가 중기적인 일반 재정관리 문제의 시급성을 완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 재정관리를 위한 관리재정수지 준칙을 수립하고, 사회보험 재정개혁은 별도의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자체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재정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일반 재정의 안정화를 목표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 자체로도 정책적 의미는 크다.

두 번째는, 현재 안과 같이 사회보험 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준칙으로 활용하되 불투명하게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험수지를 통합한 수지만을 재정준칙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험 재정수지 준칙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특히 사회보험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소득재분배 기능은 일반 재정이 담당하고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납입자의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³⁾

다만 관리재정수지와 다르게 사회보험 재정수지 준칙의 설정은 더욱 직접적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더불어
일반 재정도
재정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별 사회보험의 근본적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 기여자들에게 기여한 만큼 혜택이 비례하여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경제여건과 인구구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정의 자동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혁의 수용도가 낮을 위험이 있으며,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관련
논의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추진동력이 약한 이유는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 한도라는
준칙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에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으로 개별 수혜자의 부담과 수혜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통합재정수지를 준칙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일반 재정과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명시적으로 준칙 도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재정의 통합적 운용과 투명성 제고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부담은 더욱 커지는 측면이 있다.

2. 재정준칙의 중장기 앵커와 연간 수지 및 지출 목표의 명시화

2020년 재정준칙안은 창의적으로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곱한 수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준칙은 일반 국민과의 의사소통도 용이하지 않고, 연간 재정운용에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많은 국가의 사례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필요한 재정여력을 담보하는 국가채무/부채 수준을 평상시에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앵커로 설정하고, 연간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중기적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는 형태로 재정준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특수성이 있다. 사회보험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잠재적 재정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일반 재정조차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재정위험에 대한 진단과 공개를 기반으로 한 재정개혁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재정개혁 프로그램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출구조조정과 국민부담 증가 목표가 포함되면,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기의 재정준칙 수립이 가능하다. 그 이후 재정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안정된 형태의 재정준칙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재정구조 안정화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준칙과 재정 안정화 이후의 재정준칙이 차별화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관련 논의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추진동력이 약한 이유는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 한도라는 준칙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에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⁴⁾ 60%와 3% 한도의 유럽연합 재정준칙은 도입 당시의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목표가 설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4) 2013년의 신재정협약(New Fiscal Compact)에서는,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균형 재정수지 또는 흑자를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하로 유지하며; 예외적인 경제적 상황은 고려할 수 있으며;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0%보다 대폭 낮은 국가에서는 최대 1.0% 범위 내에서의 구조적 재정적자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2020년 재정준칙안은 이러한 전환기의 재정개혁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2025년에 도입할 막연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준칙 도입의 목표는 당면한 재정문제 타개를 위해 재정운용 기초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2020년 재정준칙안은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실현되기에는 목표의 구체성이 약하다. 특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3%의 적자 한도를 준칙으로 포함하는 2020년의 재정준칙안으로는 국가채무 수준의 근본적 안정화가 어렵다.

국가채무 앵커의 수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위기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IMF의 연구에서는 시장접근성이 있는 선진국은 85% 수준을 위험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의 채무 앵커인 60%는 위기 시에 25% 정도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유지가능성이 확보된 안정화된 상태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채무 앵커는 35±5%이다. 유럽연합 기준인 60%를 훨씬 하향하는 수준이고, 스위스의 경우는 2022년에 42.69%이며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에는 39.79%였다. 중소 강국의 유럽국가의 경우 60%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의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수준이 70%로 보고 있으며 위기 시에 필요한 재정여력이 30% 이상이며, 독일 수준의 시장 프리미엄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채무 수준이 40%라고 판단하여 채무 앵커 수준을 설정하였다.

<표 3> 일반정부 총부채

(단위: GDP 대비 비율, %)

구분	2019년	2021년	2025년 전망치
한국	42.1	49.8	56.8
덴마크	33.6	37.3	33.8
네덜란드	47.6	56.7	54.5
스웨덴	34.9	37.3	30.2
스위스	39.8	42.2	38.8

출처: IMF Fiscal Monitor(April 2022)에서 발췌

국가채무 앵커의 수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위기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스위스는 1990년대
경제성장 저하와 함께
급격히 증가한
정부 부채에 대응하고자
2001년에 85%의
지지를 받은
국민투표를 통해
재정준칙을 도입하였고,
재정준칙 도입 이후
정부지출 증가폭이
하락하였다.

확장적 재정기조의 지속적 운영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채발행 규모가 크지 않고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스웨덴과 같은 경험치에 근거한 판단을 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다만 유럽의 중소강국인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부채 상황과 전망을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60%는 낮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보수적으로 국가채무 엔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도입 목적은 현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구조의 안정화이므로, 2025년 도입 시기에도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60%를 국가채무 엔커로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느슨한 엔커일 수 있다. 60%대에 이를 때까지 적자를 누적할 수 있는 준칙을 굳이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스위스의 경우, 1990년대 경제성장 저하와 함께 급격한 정부 부채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1990년과 1998년 사이에 GDP 대비 31%에서 54%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01년에 85%의 지지를 받은 국민투표를 통해 재정준칙(debt braker)을 도입하게 된다. debt braker 도입 이전의 10여 년간은 정부지출이 연간 4.3%씩 증가했으나, 재정준칙 도입 이후 연간 2.6% 증가로 하락하였다.

안정화된 재정구조하에서의 연간 재정운용준칙은 균형재정수지 준칙이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debt braker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상시에는 정부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재정을 운영하되, 경기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 지출한도 = 조정계수 × 정부 수입)으로 설정한다. 조정계수는 (실질잠재 GDP/실질 GDP 추정치)를 활용한다. 잠재 GDP가 실제 GDP보다 클 경우는 경기후퇴기이므로 조정계수가 1보다 크게 되고, 정부 지출한도는 정부수입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 이러한 조정계수를 활용하여 재정준칙을 운영하되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잠재 GDP 추정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준칙이 학계에서만 활용되는 논의가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며

국민과의 소통도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스위스는 잠재 GDP 추정 시, 생산함수와 같은 모형에 기반한 추정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추세 분석 기법인 Hodrick-Prescott filter를 조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엄밀성에 있어서는 떨어지지만, 조작(manipulation)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의 debt braker는 헌법에 명시된 항구적인 균형재정수지 준칙이다. 경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는 '보상계정(compensation account)'에 기록되며, 반드시 재정흑자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다만 보상계정에 누적된 적자의 해소 기한은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출의 6% 또는 GDP 대비 0.6%를 초과할 경우, 3년 내에 해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2010년부터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개선되었다.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지출과 수입(extraordinary expenditures and revenue)'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상각계정(amortization account)'에 기록되며,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지출 감소)를 통해 6년 내에 해소되어야 한다.

안정기에는 스위스와 같은 균형재정수지 준칙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이행기라면 (정부지출 증가율 = 실질 잠재성장률 + 인플레이션율 - debt braker 요소)를 포함하여 지출준칙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debt braker의 요소는 정부채무 앵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흑자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균형재정수지 준칙을 바로 적용하여 실행하면 재정의 유지가능성 측면에서는 바로 안정화 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앵커는 50% 수준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향후의 지속적인 재정구조 혁신의 촉매제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경직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 재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확보되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점진적 적자 축소 중기계획을 기반으로 준칙을 설정하여 국가채무 앵커 수준에 도달하면 균형재정수지 준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에 발표된 재정운용 기조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GDP 대비 55% 수준을 채무한도로 설정하고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 재정구조를 중기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가 반영되어

우리나라는 재정구조의 경직성이 상당히 높고 재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점진적 적자 축소 중기계획을 기반으로 한 국가채무 앵커 수준에 도달하면 균형재정수지 준칙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산된 제2세대
 재정준칙 운용 경험을
 통해 독립적 재정기구가
 준칙 기반 재정운용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있다. 55% 수준의 국가채무 한도는 2025년 이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적자 누적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근본적 재정구조 혁신이 향후 2년간 추진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3. 재정준칙 준수 모니터링과 강제 장치로서의 독립적 재정기구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산된 제2세대 재정준칙의 특성은 재정준칙의 유연성 강화와 더불어 강제기제(enforcement mechanism)의 강화이다. 재정준칙의 유연성은 예외규정(escape clause)의 명시화와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을 활용하여 경기대응성 수지준칙을 도입하여 강화되었다. 이러한 유연성 강화의 부작용은 재정준칙이 복잡해져서 국민과의 소통이 어렵고 준수 여부의 판단과 강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독립적인 재정기구의 수립과 운영을 통해 재정준칙 관련 모니터링과 평가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졌다(IMF, 2018a).

제2세대 재정준칙 운용 경험을 통해 독립적 재정기구는 준칙 기반 재정운용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2021년 1월 현재 49개국에 51개의 독립적 재정기구가 존재한다. 2010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상황이다(IMF, 2022).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에는 기획재정부 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림 2] 재정준칙의 변화 추세



출처: 저자 작성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적 재정기구 및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재정에 관한 통합적 의사결정구조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행정부 내의 중앙정부-지자체 및 교육청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둔 위원회를 구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을 위한 정보 생산과 진단 분석 기능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다(박노옥, 2022).

우리나라의 분절화된 재정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통합적 거버넌스로서의 범국가적 재정위원회 수립과 운영은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재정위원회의 운영 이전에 필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직에서의 재정 관련 정보 생산이다.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의 생산과 진단 분석 활동 없이는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독립적 재정기구의 역할과 범위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기능은 재정전망,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재정준칙 모니터링 및 평가이다. 그리고 독립적 재정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정보에 대한 실시간에 가까운 접근권, 법적 독립성, 인사권 독립, 선거주기를 초과하는 임기 보장, 언론과의 직접 소통 그리고 안정적 예산보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립적 재정기구로 알려져 있지만,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진 우리나라에서의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행정부 내에 위치하면서 독립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네덜란드나 영국의 사례와 같이 행정부 내에 위치하지만 독립성을 부여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는 독립적 재정기구의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다.

최근에 장기재정전망이나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재정당국이나 담당부처가 내부적으로 주요 재정정보의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정보 생산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개선 여지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재정준칙의 도입과 더불어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객관적 재정정보 생산을 위한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⁵⁾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을
위해 행정부 내에
위치하면서
독립성을 가진
재정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5) 박노옥(2022)은 독립적 재정기구의 글로벌 동향과 주요 쟁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준칙의 도입과 운영으로 인해 재정지출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단기주의를 촉발하거나 방치할 위험, 분식회계나 예산 외 수단을 동원하여 재정준칙을 회피할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4. 재정준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

재정준칙의 도입과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첫째, 경기동행적 재정지출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준칙이 적절하게 디자인되면 재정준칙이 경기대응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주장과 증거도 존재한다. 재정준칙의 준수를 통해 경기호황기에 재정여력을 비축하여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재정책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조항의 설정이나 지출준칙에 경기요소를 포함하여 경기대응적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 쟁점은 각국의 재정준칙 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재정지출 총량만을 통제하므로, 재정지출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단기주의를 촉발하거나 방치할 위험이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총량 통제에 초점이 있으므로,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자들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재정투자(인프라, 교육, 구조조정 등)는 축소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유리한 재정지출(현금성 이전지출)은 확대할 위험이 있다. 이 문제의 완화를 위해 소위 말하는 Golden Rule의 설정을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는 보호하고 재정준칙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는 국가들이 있다. 다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남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강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스위스의 경우 지출한도 설정 시 투자지출도 한도 내에 포함한다. 개별 국가의 재정운용 여건에 따라 재정준칙 적용 대상 세입이나 세출의 범위의 적절한 설정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준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제외 대상은 최소화 또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적 재정기구나 외부 기관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도 단기주의에 치중된 지출구성의 변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분식회계나 예산외 수단을 동원하여 재정준칙을 회피할 위험이 있다.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나 제대로 작동하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없을 경우, 창의적 회계처리와 예산 외 수단을 활용하여 재정준칙을 무력화시키고 재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재정운용과 관리의 기본적인 요소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재정준칙이 해결책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IV. 정책 제언과 맺는말

기존 재정위험 요소인 저성장·인구구조 고령화에 더하여 팬데믹·인플레이션·기후변화 영향 가시화·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악화 등의 새로운 위험요소가 동시 다발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점진적 재정규율 약화와 더불어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합의 기반의 상실, 그리고 재정적자 누적 추세의 구조화 등으로 인한 재정위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재정정책 수립과 운용과정에 내재된 적자(deficit) 및 경기동행적(procyclical) 편향(bias)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 재정정책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정준칙이다. 과도한 재정적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은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재정준칙은 이러한 재정운용의 편향성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재정준칙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하며 재정운용상에 구체적인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력과 복원력이 있어야 하며, 모니터링과 강제하기가 용이해야 한다(Kopits and Symansky, 1998).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되 경기 안정화, 경제의 장기적 성장, 그리고 포용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 또는 최소한 방해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준칙은 찾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의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재정준칙 설정 시, 이러한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면서 개별 국가의 재정운용의 중요한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지표 간의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헌법에 균형재정수지 준칙을 포함하여 단순하면서도 구속력이 있는 준칙을 수립하였다. 반면에 유연성은 약한 측면이 있다. EU의 경우 정교하고 복잡한 재정준칙, 강제규정과 재정기구가 있다. EU의 경우 구속력도 어느 정도 있고 유연성도 있지만, 단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준칙이다.

본고의 작성 목적과 범위는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준칙의 주요 요소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기 부채수준과 중단기 운용지표 설정에 대한 시사적인 검토로 글을 맺고자 한다.

재정준칙의 수립 시 중장기적인 앵커 성격의 국가부채 수준을 설정하고, 연간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되 경기 안정화,
경제의 장기적 성장,
포용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최소한 방해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채무 수준은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관리와 평가를 위한
앵커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표와 목표는 별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운용 준칙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 부채 수준 설정 시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국가부채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헤드라인 국가부채 수준 지표를 설정은 하되, 우리나라 재정운용에서 잠재적 또는 우발적인 부채 중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부분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위험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재정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부채 관련 지표의 설정과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과거에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될 것이다.

국가부채 수준은 상한이라는 기준보다는 평상시에 유지해야 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의 국가부채 60% 상한 기준은 초국가적인 조직으로서의 EU가 회원국의 재정운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출 소요에 대응되는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담보하는 수준의 국가부채 수준이 평소에 유지되어야 한다.

2022년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채무 50% 중반 수준의 상한도 현재로서는 상당 수준의 재정개혁 없이는 달성이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을 평상시에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면, 미래의 위험 발생 시 필요한 재원이 확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위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3년 정도의 팬데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 팬데믹의 지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발생, 성장 둔화, 기후변화 위험 증가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중기적으로는 50% 중반 수준으로 국가채무 수준의 한도를 설정하여 재정 안정화의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재정 안정화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국가채무 앵커 수준은 유럽의 중소강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수준은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관리와 평가를 위한 앵커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표와 목표는 별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준칙은 재정수지, 지출 또는 수입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표 4>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재정준칙 지표에 대한 장단점을 요약하고 있다.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표는 국가부채비율의 관리를 위한 운용

<표 4> 재정준칙 유형의 장단점

재정준칙 유형		장점	단점
명목 재정수지 준칙	총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과 모니터링 용이 운용 지침으로서 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동행성 강화 위험 수입/지출구성의 변화 유발 위험
	구조적/ 경기조정 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안정화 유도 바람직한 운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산과 모니터링이 어려움
	Golden Rule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투자 보호 세대간 형평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지속가능성과의 연계 미약 회계조작 위험
	경기주기 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안정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친 긴축 또는 완화 기조 위험 모니터링과 강제 어려움
지출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과 모니터링 용이 거시적 안정화 허용 운용지침으로서 명확 적절한 설정이 되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구성의 변화 유발 위험 (조세)수입 증대 노력 유인 약화
수입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증대 또는 조세부담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지속가능성과 연계 미약 경기동행성 강화 위험

주: 1) Golden Rule은 자본지출을 제외한 총수지(경상수지)의 한도를 설정하는 준칙으로서, 자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칙임. 경상지출은 수입으로만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출처: IMF(2018b) p. 4 Table 1. 재정리

준칙(operational rule)이다. 부채 규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운용준칙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재정적자의 한도 또는 지출증가율 한도가 있다. 최근 EU의 재정준칙 개혁을 위한 논의의 초점은 일부 부채가 급증한 국가들로 인한 국가부채 한도 60%와 관련된 쟁점도 있지만, 개별 국가의 재정운용을 중단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 대한 논의도 있다.⁶⁾ EU에서는 현재 구조적 재정수지를 개별 국가의 중기적 목표(medium-term objective: MTO)로 설정하고, 중기적 목표로의 수렴 과정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두 가지 운용준칙을 활용하고 있다. 연간 구조적 재정수지 조정 폭(dSB)과 순지출증가율(net primary expenditure growth, 이자지출 제외)의 한도이다. 유럽의 재정기구인 European Fiscal Board는 운용준칙을 순지출증가율(net expenditure growth, 이자지출 포함) 하나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 이유는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성장률과 GDP 자체의 잦은 수정으로 인해 사후적인 수정이 발생하고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우며,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한 순지출 증가율을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표는 국가부채비율의 관리를 위한 운용준칙으로, 부채 규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운용준칙의 설정이 필요하다.

6) Benalal and et al.(2022) 참조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여건상 준칙 기반 재정운용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에 도달하였다. 재정준칙의 수립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도입을 통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재정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활용하되, 이자지출을 포함하여 통화정책과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상한은 운용준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 3%의 준수를 통해 재정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EU의 재정준칙과 같이 중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간 목표들을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경기변동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와 더불어, 정부의 통제력 밖에 있는 요소가 상당부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수립 시 정부 통제하에 있으며 활용하기 용이한 순지출증가율(이자지출 포함) 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여건상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에 도달하였다. 재정준칙의 수립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도입을 통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재정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년간 논의되었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KIPF](#)

<참고문헌>

- 박노욱, 『재정정책 혁신을 위한 독립적 재정위원회 도입 방안 :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제주대학교, 2022.
- Benalal, Nicholai, Maximilian Freier, Wim Melyn, Stefan Van Parys, Lukas Reiss, *Towards a Single Performance Indicator in the EU's Fiscal Governance Framework*, European Central Bank, Germany, 2022.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econd Generation Fiscal Rules: Balancing Simplicity, Flexibility, and Enforceability,” IMF Staff Discussion Note 18/04, 2018a.
- _____, “How to Select Fiscal Rules,” IMF How-To-Note, 2018b.
- _____, “How to Calibrate Fiscal Rules,” IMF How-To-Note, 2018c.
- _____, “Fiscal Rules in Korea-Some Considerations,” IMF Staff Country Report No. 21/65, 2021, pp. 10-19.
- _____,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n. 2022.
- _____, *Fiscal Monitor - Fiscal Policy from Pandemic to War*, Apr. 2022.
- Kopit, Geroge and Steven A. Symansky, “Fiscal Policy Rules,” IMF Occasional Paper No. 162, 1998.





2022년 세제개편안

■ 2022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배정훈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정다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배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I. 2022년 세제개편의 배경 및 방향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세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체감물가를 낮추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5. 30.),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6. 19.),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7. 8.) 등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세제 측면에서도 유류세 37% 최대 폭 인하, 서민 밥상물가 관련 품목 등 할당관세 확대 적용, 커피·코코아원두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면서 구조적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제 측면에서도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민간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아래 2022년 세제개편안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구조적 재편을 통하여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성장 경로 제고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세부담의 적정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소득과악체계 등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과 같이 지속가능한 재

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고, 최근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방안도 마련하였다.

II.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1. 경제 활력 제고

가.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유로운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먼저 OECD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 간소한 법인 과표체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별도로 설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성장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 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였다.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내자회사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 → 8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2년을 끝으로 일

몰 종료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였다.

아울러 면세점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생산물품·수입물품 간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 생산물품은 국내 판매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윤 등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수입물품은 비용·이윤이 제외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 과세 형평을 위해 국내 제조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인정하였다.

나.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방안도 강구하였다. 우선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 현재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19%)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외국인기술자·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의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투자 지원 측면에서 대기업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하고, 중견기업의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시 완료기한을 2년 내 → 3년 내로 연장하였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다.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기업승계 관련 기업 애로도 대폭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확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을 매출액 0.4조원 미만 →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 → 1,00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7년 →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하였다.

기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 →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 → 5년 단축,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과세제도도 정비하였다. 먼저 최근 주식시장·가상자산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23년 → '25년) 하였다. 다음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지분을 요건을 삭제하고,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도 0.20%로 인하하였다.

2. 민생 안정

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높은 물가상승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였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 ~1,400만원, 1,200만~4,600만원 → 1,400만~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축소하여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하였다. 근로자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하였다. 또한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5%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 → 80%로 상향하는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1억원 한도로 허용한다. 또한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퇴직금이 5천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퇴직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

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하였다. 우선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2년 → '23년까지 1년 연장하였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및 분할납부(최대 5년)를 허용하는 폐업 후 재기사업자의 범위를 '22. 12. 31. 이전 폐업 후 '25. 12. 31.까지 재기한 자로 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였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였다.

다. 지역 균형발전 강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등 3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다음으로, 수도권과 밀역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 위기 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라. 부동산세제 정상화

그간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을 일반은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 12억원으로 상향하였다.

이와 함께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다.

3. 조세인프라 확충

가. 소득파악·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및 조세회피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강화하였다.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월별 제출로 단축하고, 전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우선 폐지·축소하여 금년 총 10건의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 관리도 강화하였다.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로 확대하였다. 또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하고,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로 상향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반입 증가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 한도를 15만원 →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이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하게 된다. 올해 입법화하여 '24년 시행할 예정이다.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가.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조세제

도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 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 사유를 확대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자 외에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년 →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본 200달러, 술 1병을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에 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III.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수효과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1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 '23년 6.4조원, '24년 7.3조원이 감소하여 '24년 세수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세목별로는 소득세 2.5조원, 법인세 6.8조원, 증권거래세 1.9조원, 종합부동산세 1.7조원 등이 감소된다.

세수감소 규모는 총 국세수입의 약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년 세제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하였다.

아울러 세수효과에 대한 세부담 귀착은 개인 3.4조 원, 법인 6.5조원 감소로 추산되며 개인 세부담 감소 귀착분 중 서민·중산층 감소분은 2.2조원이며, 법인 세부담 감소 귀착분 중 중소기업 감소분은 2.4조 원이다.

2. 향후 추진일정

금년 세제개편에 포함된 총 18개 법률의 개정안은 8월 중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dwjung@kipf.re.kr)

정부는 2022년 7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거 10년 동안 사용한 ‘세법개정안’이라는 명칭 대신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한 것에서부터 과거 제도와의 차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첫 개편안을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과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 지향점이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2017년, 2018년),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2019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2020년), 선도형 경제전환 및 경제회복지원(2021년)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개편안으로 해석된다. 본고는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을 검토 및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 2022년 세제개편안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 경제가 반등하면서 큰 폭으로 세수가 증가(2020년 285.5조원 → 2021년 344조원)하였다. 큰 폭의 세수 증가는 법인 실적의 뚜렷한 개선, 금융 시장 및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의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2021년에 법인 실적의 호황으로 2022년에도 세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그 불안이 증폭되었고, 지난 40여 년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경험해본 적 없는 고(高)물가에 대한 우려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 시점마다 하향 조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3년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세계개편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세계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가. 경제활력 제고

2022년 세계개편안의 첫 번째 핵심 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추가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적인 사항은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 점이다. 과표 2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고 한계세율 22%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율로 법인세 과세 이후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국내 법인세로 과세하는 제도를 개정하여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불포함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되었다.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 기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에 원활하게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하여 조세의 합리적 개편

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기업 지원 개편 내용으로 가업승계 제도 개편이 포함되었다. 대상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규모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0년에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고, 고용유지 기준인원도 축소했는데, 이를 이번 개편안에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 기준인원도 또다시 감축하였다. 무엇보다도 2022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을 매출기준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확대 적용하였는데, 이를 1조원까지 다시 늘린 것은 상당히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존의 고용중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용중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항목으로 통합하여 고용중대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상향 조정하여 단순화하였다. 추가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고용중대 제도를 이어나가되, 제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하였다. 그동안 도입 논란이 많았던 금

용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 1월 1일 이후 도입으로 유예한 것이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2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 및 경기 둔화 우려,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이 유예 이유이다. 현행 양도세 과세대상도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종목당 10억원 보유에서 종목당 100억원 보유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주주 판정 시 본인 보유금액만 계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부터 0.15%를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존 제도를 개정하여, 2023년에는 0.2%, 2025년에 0.15% 적용안을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나. 민생 안정

2022년 세계개편안의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민생 안정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다.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구간에 대한 한계 소득세율은 6%, 15%, 24%로 2010년부터 줄곧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그동안 고정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자연스럽게 조정됨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는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한계 세율 구간을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4,600만원의 두 번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과표 1,400만원(총급여 약 3천만원)의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하고, 과표 5천만원

(총급여 약 7,8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추가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반면에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였다.

공제 항목 조정도 개편안에 포함하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현행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개별 항목당 100만원 한도가 통합되어 3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더해, 저소득 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포함하였다. 기존에는 수급 기준이 재산 2억원 미만이었지만 이를 20% 인상하여 2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최대 지급액의 경우에도 10% 인상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자녀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민생안정과 관련한 세계개편 중 큰 주목을 받는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과 관련한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자 한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 부담상환을 조정하였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세율의 경우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

로 조정하였고,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14억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

다. 조세인프라 확충

2022년 세제개편안의 세 번째 핵심 과제는 조세 인프라 확충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직 종사자 등)의 소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파악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 개편안에도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되었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되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공급가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적용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현금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13개 업종을 추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의 네 번째 핵심 과제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작업이며, 이번 개편안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

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20% 적용을 폐지하고, 물품별 간이세율도 인하하였다.

II. 2022년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이번 장에서는 전반적인 세입 환경을 평가하고, 일부 개편 내용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1. 전반적인 세입 환경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국세 수입은 396.6조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 약 53조원 증액되었다. 2022년 상반기에도 법인 실적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소비심리가 상승한 점도 2022년의 세입 여건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2022년 하반기부터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지속은 2023년 세입 환경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5%(정부 전망)의 견고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이 역시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하다. 특히,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난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장기화되는

물가 상승 압력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경우, 법인 실적 호조에 따른 세입 환경의 긍정적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2023년의 전반적인 세입환경이 2022년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세제개편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목표가 소득재분배, 과세형평, 포용 및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과 대비될 수밖에 없는 경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 역시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입 기반의 안정적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직후 세수가 감소하긴 하였으나, 최근 5년간 국세 수입의 환경은 예상보다 양호하다. 과거 2001년에 국세 수입이 약 96조원이었으며, 2011년에 약 192조원으로 10년 만에 100조원이 증액되었고, 이후 또 다시 100조원 증가에는 단 7년이 소요되어 2018년에 약 293.6조원을 기록하였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은 약 396조원으로 2018년 이후 단 4년 만에 100조원 증액이 유력하다. 최근 국세 수입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경제 활력이 제고되고, 글로벌 경기침체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호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경우, 세입 기반은 앞으로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2. 경제 활력 제고

가. 법인세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단순화다. 정부의 주장대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국제조세 경쟁의 심화 등으로 법인세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율 최고 한계세율은 앞서 검토했듯이 25%이며, 최고 한계세율 구간의 과표는 3,000억원 초과 법인 기업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은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따라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최고 한계세율이 주요 OECD 회원국에 비해 높다고 해서 실제 세 부담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각종 공제,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한 실효세 부담을 비교해야 정확한 세 부담 수준을 알 수 있다. OECD 등에서 제시하는 국가 간 실효세율의 크기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수준이다. 다만 국가별 실효세율을 정확히 비교하기에는 자료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정확한 비교라

<표 1> 해외 주요국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

(단위: %)

구분	국세분				지방세분 포함			
	2011		2021		2011		2021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1	미국	35.00	콜롬비아	31.00	일본	39.54	포르투갈	31.50
2	프랑스	33.30	호주	30.00	미국	39.19	콜롬비아	31.00
3	벨기에	33.00	코스타리카	30.00	프랑스	36.10	호주	30.00
4	호주	30.00	멕시코	30.00	벨기에	33.99	코스타리카	30.00
5	일본	30.00	뉴질랜드	28.00	이탈리아	31.40	멕시코	30.00
6	멕시코	30.00	프랑스	27.50	호주	30.00	독일	29.83
7	스페인	30.00	오스트리아	25.00	멕시코	30.00	일본	29.74
8	뉴질랜드	28.00	벨기에	25.00	스페인	30.00	프랑스	28.41
9	노르웨이	28.00	한국	25.00	독일	29.55	뉴질랜드	28.00
10	이탈리아	27.50	네덜란드	25.00	룩셈부르크	28.80	이탈리아	27.81
11	스웨덴	26.30	스페인	25.00	포르투갈	28.50	한국	27.50
12	핀란드	26.00	터키	25.00	뉴질랜드	28.00	캐나다	26.21
13	영국	26.00	이태리	24.00	노르웨이	28.00	미국	25.75
14	오스트리아	25.00	일본	23.20	캐나다	27.70	오스트리아	25.00
15	덴마크	25.00	이스라엘	23.00	스웨덴	26.30	벨기에	25.00
16	네덜란드	25.00	그리스	22.00	핀란드	26.00	네덜란드	25.00
17	포르투갈	25.00	덴마크	22.00	영국	26.00	스페인	25.00
18	이스라엘	24.00	노르웨이	22.00	오스트리아	25.00	터키	25.00
19	한국	22.00	포르투갈	21.00	덴마크	25.00	룩셈부르크	24.94
20	에스토니아	21.00	슬로바키아	21.00	네덜란드	25.00	이스라엘	23.00
21	룩셈부르크	21.00	미국	21.00	한국	24.20	그리스	22.00
22	칠레	20.00	스웨덴	20.60	이스라엘	24.00	덴마크	22.00
23	그리스	20.00	에스토니아	20.00	스위스	21.17	노르웨이	22.00
24	아이슬란드	20.00	핀란드	20.00	에스토니아	21.00	슬로바키아	21.00
25	슬로베니아	20.00	아이슬란드	20.00	칠레	20.00	스웨덴	20.60
26	터키	20.00	라트비아	20.00	그리스	20.00	에스토니아	20.00
27	체코	19.00	체코	19.00	아이슬란드	20.00	핀란드	20.00
28	헝가리	19.00	폴란드	19.00	슬로베니아	20.00	아이슬란드	20.00
29	폴란드	19.00	슬로베니아	19.00	터키	20.00	라트비아	20.00
30	슬로바키아	19.00	영국	19.00	체코	19.00	스위스	19.70
31	캐나다	16.50	룩셈부르크	17.00	헝가리	19.00	체코	19.00
32	독일	15.00	독일	15.83	폴란드	19.00	폴란드	19.00
33	라트비아	15.00	캐나다	15.00	슬로바키아	19.00	슬로베니아	19.00
34	리투아니아	15.00	리투아니아	15.00	라트비아	15.00	영국	19.00
35	아일랜드	12.50	아일랜드	12.50	리투아니아	15.00	리투아니아	15.00
36	스위스	8.50	칠레	10.00	아일랜드	12.50	아일랜드	12.50
37			헝가리	9.00			칠레	10.00
38			스위스	8.50			헝가리	9.00
	OECD 평균	23.04	OECD 평균	21.24	OECD 평균	25.08	OECD 평균	23.18

주: 1. Surtax가 부과되는 일부 국가의 국세분 세율은 Surtax를 제외하고 계산함

2. 칠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2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10%로 인하함

출처: 김빛마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2022. 6.) 중 발췌

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국가 간 명목 법인세율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의도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의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면서 법인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특히 최고 한계세율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개편은 이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기존 경제학 연구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찾기는 어렵다.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Dobbins and Martin, 2016; Djankov et al., 2010; Vartia, 2008; 조명환, 2012),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공존한다(Shah, 2006; 김우철, 2005). 또한 법인세

율 인하가 국제적 투자 증대에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Tavares-Lehmann et al., 2012). 궁극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Arnold et al., 2011; Mertens and Ravn, 2013; Mooij et al., 2018, Romer and Romer, 2010; 전영준, 2003; Xing, 2012), 뚜렷한 결론을 찾기 어렵다. 또한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연구 사례가 국내 사례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보장도 없다.

법인세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과도한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그 수준이 낮다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

<표 2> 법인세 구조 비교

단일세율(27개국)		2단계 세율(15개국)		3단계 세율(3개국)		4단계 이상 세율(3개국)	
미국 콜롬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독일 아일랜드 헝가리 라트비아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단일세율 + 경감 1단계 세율	호주 칠레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대만 인도	단일세율 + 경감 2단계 누진세율	룩셈부르크 중국	단일세율 + 경감 4단계	코스타리카 (총 5단계)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 4단계)
		단일세율 + 경감 2단계 누진세율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일본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2단계 누진세율	네덜란드 홍콩	3단계 누진세율	아르헨티나	4단계 누진세율	한국

주: 1. 각국의 세율은 중앙정부 기준임

2. 파란색으로 표기한 국가는 OECD 회원국임

3. 라트비아는 소기업 소유주의 사회보장기여금, 개인소득세를 대체하는 '영세기업세(Micro-enterprise tax)'를 통해 소기업의 매출액에 대하여 2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지만, 법인세가 아닌 별도 세목임을 고려하여 단일세율 국가로 분류함

4. 캐나다는 내국인 소유 비상장법인(CCCP)에 대하여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함

5. '단일세율+경감 2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더라도, 경감세율의 최고세율이 표준 단일세율과 같은 경우 2단계 세율 국가로, 다른 경우 3단계 세율 국가로 분류함

출처: 김빛마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2022. 6.) 중 발췌

인세율이 높으면, 그만큼 내국법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율 인하 개편안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감소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는 취지의 개편으로 이해된다.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 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구조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복잡한 편이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ECD 회원국 대부분은 2단계 세율 이하의 구조로 법인세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율 구조가 복잡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주어진 환경에서 기업의 최적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된다. 경제 활력 제고,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과세표준 구간의 감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부 중견기업까지 1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개편은 과표의 단순화라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우 영세한 기업에 대한 별도 적용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나. 법인세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의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는 시점에 투자 및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

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잘 드러나는 개정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과 더불어 역동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과감히 허용하는 것이 역동적 경제 성장과 혁신 성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개편안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8%의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에서도 혁신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이들의 혁신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기업승계제도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하여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기업승계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의 엄격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업종 변경에 대한 제약이 심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3년간 기업승계 관련 요건을 완화하였고, 이번 개편안에는 그 완화 정도를 더 확대하였다. 특히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까지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사후관리 요건을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기업상속공제 도입 초기와 같은 조건이며, 독일·일본 등도 5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개편이라 생각한다. 또한 고용유지

조건, 업종변경 범위를 완화한 것 역시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개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필자가 과거 연구한 내용(박종수 외,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이용이 기업의 성장, 고용자 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과거 해외 연구는 법인세 인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업상속제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부정으로 나뉘어 뚜렷한 실증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Anderson and Reeb, 2003; Perez-Gonzalez 2006; Bloom and Reenen, 2007). Perez-Gonzalez(2006)에 따르면 가업상속 제도 자체보다는 가업상속이 되더라도 상속인의 자질에 따라 기업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뚜렷한 실증 근거는 찾기 어렵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으로 확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특이한 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중견기업 판단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전기 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등의 기준 금액이 매출 1,5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1조원은 대상 범위를 비교적 넓게 산정하는 느낌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의 편법적인 가업승계 및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가업승계 요건을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크게 증가시킨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 1조

원까지 가업승계를 허용하더라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기준 혹은 별도의 엄격한 사후관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 금융투자소득세

마지막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하여 살펴볼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안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여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 초기에 기본공제액은 2천만원으로 설정되고, 이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3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 세계개편안에서는 이를 다시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2천만원의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특히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그마저도 일부 대주주에 국한하는 등 조세 형평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과세 측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바람직해 보인다.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개편안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유예가 금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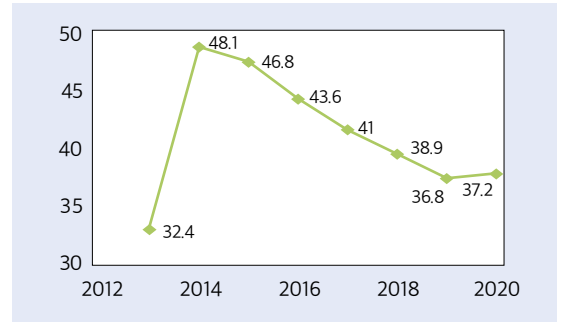
3. 민생 안정

가. 소득세

이번 개편안에 민생 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도 상승하고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득세 납부세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근로소득세 세수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세 부담을 낮추면서도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그동안 자연스럽게 감소해온 면세자 비중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간 정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그대로 유지한 측면이 있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4%로 감소한 이후, 2014년에 48.1%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이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줄어 2019년 귀속 36.8%까지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 이후 2020년 귀속 기준 37.2%로 소폭 상승하였다. 면세자 비중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은 여전히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면세자 비중의 축소 방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 한계 소득세율 구간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폭의 증가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그동안의 추가 소득세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다. 서민 및 중산층 세

<그림 1>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단위: %)



출처: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담 완화와 정부의 넓은 세원 확보라는 장기적 정책 목표 달성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계층과 서민들이 주로 많이 몰려 있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각각 1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개정하였다. 필자가 소득세 과세자료로 살펴본 결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의 경우 각각의 항목에 대해 1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는 비중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칸막이를 없애고 300만원 통합 공제를 적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기본공제 한도가 사실상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들 계층에게도 전반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끔 설계하였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축소하여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고소득자들이 받게 되는 세 부담 경감의 정도를 줄여 실질적인 과세 형

평을 달성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소득세 개편은 세수 감소와 세원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저소득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생 안정을 도모하면서, 누진적 소득세 체계를 이용한 소득 재분배에 대한 고민이 이번 개편안에 담겨 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단순화,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조정을 통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인적용역 사업자들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과 간의 과세 형평 달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나. 근로·자녀세액 공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근로·자녀세액 공제의 재산요건 완화와 최대지급액 인상이다. 이 부분은 소득세 개편과 그 논리가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물가 인상, 임금 인상, 자산가격 인상 등 최근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생활 여건에 변화가 없음에도 명목 변수들의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탈락하고, 최대지급액을 받더라도 이전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산요건은 20% 증액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인상하였다. 이들 계층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개정은 민생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200만원씩 인상되어 이번 개편안에는 추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부동산 세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부동산세제이다. 2021년

자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019년 약 2조 7천억원에서, 2020년 약 3조 6천억원, 그리고 2021년 약 6조 1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의 개편과 공제금액의 조정 등을 법률 개정사항에 포함하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향 조정 등 시행령 사항의 변경까지 고려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은 이번 세제개편의 내용 중 가장 큰 폭의 개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은 납세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유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부세율을 2018~2019년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자산가격 상승,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당초 취지 등을 반영하여 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과세 형평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조세 형평 관점에서 더 부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의 왜곡 현상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한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202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48만명이며, 이 가운데 19만명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었으며, 나

머지 29만명은 1인 1주택자(만약 부부가 한 채씩 보유하고 있어도 이 범주에 포함됨)이며,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는 주로 이 19만명의 세 부담 감소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일부 소수 계층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된다. GDP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이 OECD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고, 앞으로 보유세 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추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개편 뒤에 향후 보유세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합리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형태의 개편은 자제하는 완만한 형태의 보유세 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 공급 유형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정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과세 당국의 노력이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간이징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순응도를 높임과 동시에 세원 파악 투명성 제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는 사실 이번 개편안의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문

제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소득과약은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교적 발빠르게 제도를 정비하고 완비해 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적용을 위한 협력 비용의 과다 등 불만 사항이 많다. 이에 대해 시행령 등으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원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이며, 서서히 대상을 확대하면서 납세 순응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의 거래정보 입수 근거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세원 확보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이런 발빠른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특별한 내용은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편의 제고의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도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는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다시 개편안에 포함하였다. 또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매입자가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제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제도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에 제도적 완비를 구축해 가는 정부의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Ⅲ. 총평 및 결론

세제개편은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되 공평한 세 부담이 되도록 개편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었다가 다행히 세입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세입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개편은 기본 원칙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굵직한 주제는 법인세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개편 내용이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세 부담을 지향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개편 방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면세자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세수 감소도 크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및 서민들에 대한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감하였다는 측면에서 민생 안정을 추구한 공평한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측면에서는 법인세 과표 기준, 가업상속공제 기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기준에 비해 뚜렷한 개선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득세 개편에서도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개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더 효율적인 세제개편이 되었을 것이다. 각종 공제 제도의 정비 없이 소

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만 조정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소득세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수직적 공평을 추구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공제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인적용역 사업자 간의 과세의 수평적 공평까지 포함하는 공평한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를 막고, 세수 결손을 막으려는 정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반영된 개편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굵직한 내용이 담긴 개편안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거 세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면도 존재하여 개편안의 새로움이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세제 운영 방향과는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개편안이라는 점이다. 이번 개편이 역동적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kipf](#)

<참고문헌>

- 김빛마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6.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 박종수·구성권·정다운, 『가업상속 현황 및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2019.
- 전영준, 「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한국은행 경제분석, 2003.

- 조명환, 「법인세제가 기업 투자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2012.
- Anderson R.C., and Reeb, D.M., “Founding-Family Ownership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S&P 500,” *The Journal of Finance*, 2003.
- Arnold, J.M., B. Brys, C. Heady, A. Johansson, C. Schweltnus, and L. Vartia, “Tax Policy for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2011.
- Bloom N., and Reenen, J.V., “Measuring and Explaining Management Practices Across Firms and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7.
- Djankov, Simeon, Tim Ganser, Caralee McLiesch, Rita Ramalho, and Andrei Shleifer,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3), 2010.
- Dobbins, Laura and Martin Jacob, “Do Corporate Tax Cuts Increase Investment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46, Issue 7, 2016.
- Mertens, Karel, and Morten O.Ravn., “The Dynamic Effects of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2013.
- Mooij, Ruud De, Shafik Hebous and Milena Hrdinkova, “Growth-Enhancing Corporate Tax Reform in Belgium,” *Nordic Tax Journal*, 2018.
- Perez-Gonzalez, F., “Inherited Control and Firm Perform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2006.
- Romer, Christina D., and David H. Romer.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ax Changes: Estimates Based on a New Measure of Fiscal Shocks,” *American Economic Review*, 2010.
- Shah, Anwar, “Fiscal Incentives for Investment and Innovation,” World Bank, 2006.
- Tavares-Lehmann, Ana Teresa, Angelo Coelho and Frederick Lehmann, “Tax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on: A Literature Review,” Progress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2012.
- Vartia, L., “How do Taxes Affect Investment and Productivity?: An Industry-Level Analysis of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656, 2008.
- Xing, Jing, “Tax Structure and Growth: How Robust is the Empirical Evidence?,” *Economic Letters*, 2012.



| 정책연구 |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소비와 인구구성을 중심으로
고창수·배진수·조희평
-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김우현·김대환
-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
권성준·윤정환
- 공공기관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하세정·박한준·조윤직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소비와 인구구성을 중심으로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시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민간주택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2020년에 발표한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 계획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근 거주민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도를 참고했을 때 거주지 인근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이유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인근 지역에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공공임대주



B5변형/ 136면
2021. 12.

택 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부정적 영향이 실제 존재한다면, 공급 후보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들을 동반하여 계획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책 연구, 참고자료 등 다양한 근거를 확보한 후 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이 공공임대주택 공

의 밀집 정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일차적인 대안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은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에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과,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작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를 비교하여 생각하면, 주민들의 인식 정도, 학교 등 다양한 시설의 혼잡도 등 여러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며 동시에 영향의 크기가 공급의 밀집 정도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공급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각 입지에 대한 공급의 밀집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에서 2019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소비액과 인구의 연령구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비해 일반적으로 각 공급 입지의 밀집 정도가 낮은 것이 알려져 있다.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상대적으로 밀집 정도가 낮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인근 지역에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이질성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치의 내생성(endogeneity)을 최대한 엄밀하게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의 전·후 기간을 모두 분석 자료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분석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단위는 평균적으로 150명 수준의 금융활동 인구 규모를 가지는 매우 세밀한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세밀한 지리적 단위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에는 큰 장점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선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국의 후보지 중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많은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의 매입가격이 공급 계획에 고려될 것이다. 매입가격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여건, 특히 매입 시점만이 아닌 경제적 여건의 변화 추세를 반영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스럽게 공급 지역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상이한 경제적 상황 변화 추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실증분석 과정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추정된 영향은 편의(bias)를 가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밀한 지역 단위를 이용함으로써, 공급이 이루어진 지역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최대한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협소한 지리적 범위 내부에서 구성하여 비교함으로써 추정 결과가 편의를 가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지역별 20~50대의 평균 소비액과 지역별 표본에서 20~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시계가 길지 않은 본 분석에서 소비액 정보는 인구 유입 및

유출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액은 변수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징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변수이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단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소비액은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변수에 더해 연령 구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는 20~50대에 한정된 소비액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이에 더해 20~50대의 지역별 표본 비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령대 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에 대한 시사점 또한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소비액과 연령별 표본비율 정보는 부동산114와 KCB가 제공하는 K아틀라스 자료를 통해 획득하였다. K아틀라스는 평균적으로 150명 수준의 금융활동 인구 규모를 가지는 K블록이라는 단위 수준에서 지역별 20~50대의 소비금액과 총금융생활인구에서 20~50대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진 위치의 상세 주소 좌표를 K블록과 매칭시키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실증분석에 이용할 자료를 구축하였다.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보는 각 공급 위치와 공급 세대의 규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집 정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K블록을 결합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 단위로 재구성한 분석과 K블록 단위의 분석을 모두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된 실증 분석 결과로는 K블록 단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읍면동 단위의 분석은 K블록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설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검정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읍면동 단위는 정식 행정구역이며 따라서 추후 획득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하다는 점

에서 후속 연구와의 비교 가능성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 분석이 가지는 단점도 존재한다. 상술하였듯이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는 종속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른 추세가 존재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요인들은 연구자가 자료를 통해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각 읍면동마다 상이한 정도로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요인들을 실증 모형에서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실증분석은 편향된 결과를 추정하게 된다. 읍면동 단위의 분석을 수행할 경우 읍면동의 지리적, 경제적 크기가 상당히 큰 관계로 이러한 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며, 따라서 추정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 V장에서는 읍면동 단위 분석을 수행하여 주어진 자료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통제 방식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읍면동 단위 분석의 추정 결과를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 VI장에서는 본고의 주된 결과인 K블록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K블록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치로부터의 거리를 활용하여 공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처치집단 및 처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지만 공급의 영향이 없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였다. 처치집단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지로부터 500m 반경 내부에 위치한 K블록으로, 500~1,000m 반경에 위치한 K블록은 통제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임의적인 거리 선정에 대한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거리가 크게 멀지 않는 지역 범위 내부에서는 경제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유사하게 작용할 것이

라는 직관에 근거한다.

K블록 단위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공급 여부가 처치집단 K블록의 20~50대 소비금액과 20~50대 표본 비중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건설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도 출되었다.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영향권 K블록의 평균적인 20~50대 소비금액 및 20~50대 인구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효과의 크기는 각 K블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치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며,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추정된 효과의 차이는 세대 수로 측정된 유형별 공급 규모 차이, 즉 밀집 정도에서 일정 수준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급위치별 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에 포함된 1~2년 수준의 시계에서 부정적 방향의 경제적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이 저밀도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게 저밀도 공급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공급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임대주택 유형으로 추정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 또한 영향의 크기가 밀집 정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밀도의 분산 형태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저밀도 공급은 대지 매입비용이나 건축

비용 측면에서 고밀도 공급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존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정된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절대적인 규모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공급 규모와 가용 예산, 그리고 공급 밀도를 모두 고려한 최적화된 공급 규모에 대한 탐색 작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밀집 정도가 부득이하게 높은 공급 계획이 불가피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긍정적 요소로 인식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동반한 공급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15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소비와 인구구조를 중심으로』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강보험은 한국의 국가 재정운용에 주요한 위험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자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중앙 정부 재정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 외 항목으로 분류되며 적극적인 통제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급여 서비스의 환자 본인 부담을 경감하거나,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 체계에 편입하면서 환자가 직면하는 가격을 변화시키는 가격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 정책이 의료 이용의 행태 변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에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의료비 통제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의료비 본인부담이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제도적 환경하에서 검토해 보고자 했다. 본인부담은 환자에게 유의미한 부담이 되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해야 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높지 않아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는, 다루기 까다로운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주요국에서는 본인부담의 수준이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및 의료 접근성, 환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식별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 및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해 오고 있다 (Manning et al., 1987; Einav et al., 2015; Kowalski,



B5변형/ 140면
2021. 12.

2016). 하지만, 국내에서 해당 연구 주제는 일부 주목할만한 연구결과들을 확인했지만(전병목, 2009; 박지연·채희율, 2003),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욱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한국의 실증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이용량의 관계를 식별하고자 했다.

본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했다. 가격탄력성 추정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연구결과는 1974~1982년 동안 진행되었던 RAND 의료보험실험의 결과일 것이다. Manning et al.(1987)은 해당 실험

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가격탄력성은 -0.2~-0.1의 규모로 추정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가격탄력성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이 참고할 만한 수치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후 Oregon 공적의료보험 실험 등 후속 실험들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활용한 실증분석의 결과들이 가구소득, 의료서비스(입원, 외래, 의약품 소비 등), 의료기관 종별(병원, 의원 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청구자료 및 한국의료패널 등 활용가능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환자 본인부담의 변화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했다. 제Ⅲ장은 이후 제Ⅴ장에서 본격적인 가격탄력성 추정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국 상황에서의 가격 변화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우선 2017년까지 적용된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정책제도하에서 진료비 1만 5천원 초과외래 진료 발생 시, 정액 1,500원의 본인부담에서 진료비의 30% 정률로 본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이 가격 변화에 주목하여 집근분석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구간의 의료 이용 행태를 탄력성으로 환산할 경우 약 -0.8726의 탄력성이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 실손의료보험 가입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탄력성이 상이하게 추정됨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구소득에 따라 기설정된 상한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사전적·사후적으로 의료비 지출 초과분을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가격이 0원이 되는 것

으로,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건강보험 맞춤형 DB 분석 결과, 상한제 사전 적용의 경우 환자의 외래 방문일수나, 외래 진료비 지출의 유의한 상승을 식별할 수 있었으나, 사후 적용에서는 해당 변화가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상한제 적용을 통한 가격 변화에 환자가 반응하는 것뿐 아니라, 가격 변화가 의료서비스 구매 당시 적용되는 상황과 사후 환급되는 상황에 있어 환자의 대응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제Ⅳ장은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여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료패널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건강보험 자료를 통한 탄력성 추정 과정에서 분석이 어려운 점은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이 환자가 직면하는 실효적인 본인부담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 추정을 통해 개인이 실손의료보험 및 정액형 보험을 가입한 이후 의료 수요를 변화시키는지 검토했다. 기존에도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표본 선택에 신중을 기해 민영건강보험에 미가입되었다가 가입으로 변화된 시점부터의 의료 이용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결과, 민영건강보험 가입이라는 변화는 입원 및 외래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지출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주요 선행연구 결과들과 차이가 있는 결과로 학술적인 의미가 있으며, 다음 제Ⅴ장에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더라도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제Ⅴ장은 비교적 단순한 축약형 추정 회귀 모형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본인부담과 의료 이용

의 관계를 추정했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DB를 활용해서 2002~2019년의 긴 분석 기간 동안 평균적인 본인부담 수준의 변화와 의료비 지출 및 내원 일수의 관계를 식별하고자 했다. 특히 선행연구인 Ellis et al.(2017)에 기반하여 환자가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의료 소비 과정에서의 본인부담 수준을 현 시점의 의료 소비 의사 결정에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가격탄력성을 추정했다. 또한 입원, 외래, 전체의 의료 서비스 형태,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질환, 가구소득분위별, 환자 연령구간별 탄력성을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했다. 추정 결과, 전체 의료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은 -0.2579로 추정되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입원 서비스의 탄력성이 외래 서비스에 비해 크게 추정되고, 중증질환 의료 서비스 이용의 탄력성이 만성질환에 비해 크게 추정되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의료급여 환자 및 고령층, 영유아 계층의 비탄력적인 의료서비스 소비 행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초 연구과제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자료원과 추정법을 활용해 추정된 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활용은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지만, 결론에서는 가격탄력성의 기초 추정치들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 건강보험 지출이 변수로 포함된 거시 모형 등에 기초 정보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16 『보건의료 가격 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정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 정부 예산의 규모는 2010년 3.2조원 수준에서 2021년 15.2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여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과 육아지원 사업들의 예산 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약 1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영유아 양육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요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에 대한 재정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면 저출산 대응,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 측면을 강조하고 아동의 성장과 후생 측면은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아동, 특히 영유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결정된 여러 요인들은 성인기의 여러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이 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도 결국 아동의 성인기 사회경제적 성과와 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 규모와 관련 정책들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더 넓혀가야 할 때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영유아기 인적자본 생산에 대한 주요 투입요소라 할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 개인대리양육, 아동에

대한 지출 등의 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정책들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자본생산함수의 추정과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영유아기의 인적자본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양육지원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인적자본생산함수의 추정과 정책 시나리오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양육지원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다. 2021년 기준 중앙정부 부처 중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사업을 하나 이상 시행 중인 부처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세무사업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운영하는 부처로, 대부분 영유아 보육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및 유치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고, 고용노동부의 경우 부모의 육아휴직과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 사업, 기획재정부는 민간보육시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부처 사업 외에 영유아 양육지원과 관련된 조세지출제도로 저소득 근로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도 존재한다.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2010년 3.2조원 수준에서 2021년 15.2조원 수준으로 10년 조금 넘는 기간 만에 약 5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도입되거나 확대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예산은 2010~2015년과 2017~2019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10~2015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가정양육수당과 자녀장려금이 도입되던 시기였고, 2017~2019년에는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 영유아 양육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 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예산의 많은 부분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들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녀양육 및 돌봄인력 비용 지원, 육아용품 대여 사업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도 출산 직후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성격일 것이므로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기준 광역시·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출산과 육아지원 사업의 예산 총액은 7,453억원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중 71.9%는 출산지원 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시기 전반에 대한 지원보다 출산 전후와 신생아 단계에서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출산지원 대비 빠르게 증가하면서, 육아지원 사업 예산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축적 또는 발달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의 실증 결과들도 간략하게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많은 실증연구 결과들은 지적, 사고적 능력들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

B5변형/ 156면
2021. 12.



적, 감정적 능력들과 관련된 비인지적 능력도 교육, 노동, 복지 등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인적자본 또는 능력이 다차원적이고 사회경제적 성공 요인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밝혀졌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개인 또는 사회경제적 그룹 간 능력의 격차가 어린 연령대부터 나타나 지속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셋째, 많은 연구들은 능력이 오직 유전적 또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거나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습득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러한 이유로 능력 형성에 있어서 생애과정 중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능력의 습득 또는 형성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가 존재하며, 세부능력 중에는 특정 발달단계 또는 연령대에서 보다 더 쉽게 습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실증 결과들이 존재한다. 다섯째,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참여 아동들의 능력 향상과 함께 아동들의 성인기 사회경제학적 변수들에 대한 장기 효과도 나타냈다는 실증 결과들은 취약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이 높은 경제적 효과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

막으로, 많은 실증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계층 간 능력 격차가 생애 초기의 환경과 투자 수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경제학에서는 동적능력형성모형(dynamic skill formation model)을 이용하여 인적자본 발달과 관련된 실증연구 결과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동적능력형성모형은 인적자본이 여러 발달단계를 거쳐 형성 및 축적되고, 그 결과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후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보여주는데, 이 모형으로부터 인적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능력의 자기생산성(self-productivity)은 특정 발달단계까지 축적된 능력이 동일한 타입의 능력을 생산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이는 능력 형성과정이 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소이다. 둘째, 능력의 교차생산성(cross-productivity)은 한 유형의 능력이 다른 유형의 능력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셋째, 능력과 투자 간 정적 상호보완성(static complementarity)은 특정 발달단계까지 축적된 능력이 해당 단계의 투자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넷째, 동적 상호보완성(dynamic complementarity)은 특정 발달단계에서의 투자가 이후 발달단계 투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능력의 자기 생산성과 능력-투자 간 정적 상호보완성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민감기(sensitive periods)와 중대기(critical periods)가 있는데, 민감기는 특정 능력의 생산이 다른 시기보다 더 효과적인 시기를 의미하고, 중대기는 특정 능력의 생산 효과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동적 능력 형성 모형과 도출된 개념들은 인적자본 발달과 관련한 중요한 실증 결과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먼저, 계층 간 능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취

약계층의 아동의 경우 경제 및 환경적으로 제약이 있어 초기 발달단계에서 투자 수준이 낮을 것이다. 그 결과, 취약계층 아동은 능력의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능력 축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초기 이후의 발달단계에서는 동적 상호보완성에 의해 능력에 대한 투자효과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초기 발달단계에서 벌어진 능력의 격차를 쉽게 줄일 수 없게 된다. 이는 인적자본 형성에 있어서 영유아기의 환경과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약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이유도 동적 상호보완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기개입은 결국 초기 발달단계의 투자 수준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 발달단계에서의 능력의 축적 수준을 높여주게 되고 동적 상호보완성에 의해 초기 이후 발달단계에서의 투자효과는 높아진 능력 축적 수준으로 인해 향상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능력의 자기 생산성, 상호보완성 등의 인적자본 형성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고, 영유아기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별히, 후속투자가 조기투자보다 큰 경우 후속투자의 한계생산성에 대한 식을 도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후속투자의 조기투자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낮고 능력의 자기 생산성과 투자의 생산성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능력승수가 클수록 후속투자의 생산성은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이는 조기개입의 높은 경제적 효과성을 보여주는 실증 결과들이 결국 후속투자와 조기투자 간 낮은 상호대체성(또는 높은 상호보완성)과 높은 능력승수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는 동태

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한 Cunha and Heckman(2008)의 방법론을 따라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 시 어려움 중 하나는 인적자본에 대한 다양한 척도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척도들이 자료상 결측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Cunha and Heckman(2008)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할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능력은 인지와 비인지 능력, 2차원으로 존재하고, 영유아기는 연령별 발달과정의 차이를 고려하여 영아기와 유아기, 두 발달단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투입요소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조부모·친인척·보모 등에 의한 개인대리양육 이용시간, 아동에 대한 지출을 고려하였고, 생산함수는 투입요소들에 대해 선형인 형태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가구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부모와 가구 특성 변수들이 통제되었고, 그 외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인적자본생산함수는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두 가지 능력 유형을 생산요소로 포함하면서 양육형태별 시간, 아동에 대한 지출 등 다양한 투입요소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인적자본생산함수는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형태이다. 본 연구의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에서는 인지 및 비인지 능력을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처리하고 각 잠재변수에 대한 다양한 척도들(measures)을 추정에 활용한다. 모형은 각 잠재변수별로 최소한 2개의 척도가 존재하면, 잠재변수별로 특정 하나의 척도에 대한 요인적재값을 표준화(normalization)함으로써 식별이 가능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의 척도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모형 식별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인적자본

생산함수 추정의 정확성이 다소 낮아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추정 결과는 영아기 대비 유아기의 높은 투입요소 생산성, 투입요소의 인지와 비인지 능력 간 상충된 효과 발생 가능성, 소득계층에 따른 투입요소 생산성 차이 등을 보여주었다. 영아기 대비 유아기의 높은 투입요소 생산성은 영유아기 인지와 비인지 능력 발달에 있어서 유아기가 영아기보다 중요한 시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투입요소 생산성은 대체로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소득계층을 선별하여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투입요소의 인지와 비인지 능력 간 상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유아기나 저소득계층에 집중하는 정책이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능력의 여러 차원상 발달에 있어 상충관계 존재 가능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행태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무조건부 현금 지원, 육아지원기관 이용 지원, 개인대리양육 이용 지원, 가정양육 지원 등 네 가지 정책 형태에 대한 기대효과를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은 사실상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 파라미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은 본 연구 방법론의 특성과 자료의 한계로 여러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되었고 다소 부정확하게 추정된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기반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책의 설계 및 형태에 따라 인지와 비인지 능력 발달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의 인적자본 발달 측면에서 정책효과 검토, 정책 설계 및 개편 등을 개별 정책별로 실시하는 것보다 여러 형태 정책들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혼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지와 비인지 능력, 육아지원기관, 개인대리양육, 아동에 대한 지출 등을 모두 고려한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인적자본생산함수가 아쉽게도 다소 부정확하게 추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생산함수의 추정 결과와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고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부정확한 추정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본의 수와 인적자본 척도의 수가 적었던 것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과 인적자본 척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길 기대해 본다.

두 번째로, 육아지원기관과 아동에 대한 지출이 비인지능력 발달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것처럼 기존 연구 결과 또는 경험적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성과 감정적 능력과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의 비인지능력 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가정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비인지능력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토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 능력별로 충분한 수의 척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을 통한 아동의 성인기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

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아동들은 아직 성인기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동기의 인지과 비인지 능력에 대한 지표와 성인기의 노동시장 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분석자료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분석도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2027년 한국아동패널의 마지막 조사에서 조사아동들의 성인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향후 영유아 정책의 성인기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 시 내생성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추정편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방법론상 한계로 최소한의 변수만 포함된 단순한 형태의 모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내생성 문제는 충분한 수의 도구변수를 확보하면 해결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모형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이 복잡한 계산과정과 함께 매우 긴 계산 소요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다른 방법론을 활용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서 본 연구의 결과들이 후속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17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윤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이 조직 내부에서만 생산, 활용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된 비위가 드러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윤리적 의사결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종사자 본인이 직접 윤리적인 갈등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종사자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를 회사에 신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으로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이다. 이 두 가지 윤리의식 모두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그 수준의 측정과 영향요인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의 윤리의식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대규모로 관찰하기 어려운 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설문을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윤리의식을 묻는 단답형 설문에서는 사회규범편의(social desirability bias)로 인해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측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자 실

B5변형/ 138면
2021. 12.



험설문 방식을 활용하였다. 윤리적 사회규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닌 윤리적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결정을 묻는 실험설문 방식을 채택하였다. 실험설문에서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설문응답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실험설계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접적으로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로는 허위출장, 미승인 검직활동, 내부정보 활용 사익추구, 승진심사비리, 계약심사비리 등 다섯 가지 유형의 부패행위를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응답자는 부패행위를 저지를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전반적으로 설문 응답자들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응답자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부패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패행위로 인식할수록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감지되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종사자를 비교할 경우, 모든 부패행위 유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출장 사례를 제외하고, 심각한 부패행위로 인식될수록 민간기업 종사자도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료의 허위출장, 미승인 겸직활동, 내부정보 활용 사익추구, 승진심사비리, 계약심사비리, 공금횡령 등 여섯 가지 부패행위 유형을 선정하였다. 각 사례별로 응답자는 인지한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회사에 보고할 것인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설계하였다.

부패행위의 유형에 따라 신고하겠다고 응답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다. 응답자가 부패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허위출장이나 미승인 겸직활동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패행위로 인식되는 사례에서는 신고를 선택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고, 두 유형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50%를 하회했다. 그러나 계약심사 비리나 공금 횡령과 같이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 80%에 가까운 상대적으로 높은 신고 비율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다른 이들의 부패행위를 목도하고서

회사에 알릴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구성원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 가지 부패행위 유형 중 두 조직 유형 간에 차이를 보인 유형은 미승인 겸직활동, 내부정보 활용 사익추구, 승진심사비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본인이 직접 연루되는 부패행위는 저지르기를 주저하는 반면, 타인의 부패행위 신고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민간기업 종사자들에 비해서 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모범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분석 결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이의 크고 작음을 차치하고서 보면, 자신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여있을 때 민간기업 구성원들에 비해서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더 그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을 위해 개인적 특성, 제도적 특성, 조직문화적 특성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영향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인구통계학적 특성, 직장 및 직무 관련 특성), 조직적 차원(조직 내 청렴 관련 제도 및 문화), 사회적 차원(국민의 청렴 수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 제도적 차원, 조직문화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특성 차원의 영향요인으로는 공공봉사동기, 조직에 대한 소속감 및 만족도, 외재적 동기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제도적 특성으로는 조직 내에 부패 관련 교육, 모니터링, 적발, 처벌 제도 등에 대한 응답자의 인

식을 조사하였다. 조직문화적 특성으로 조직 구성원의 부정행위 척결의지, 조직정치 수준, 승진과 보상의 공정성 수준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종속변수가 응답자 본인이 직접 부패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주요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개인적 요인 변수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일부 유형의 부패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외재적 동기는 가설로 제시된 바와 상충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외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좇아 수단이나 과정 측면에서 비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나, 본 연구의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 차원 변수 중에서 부패방지교육의 적극성이 상당수 부패행위 유형들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패방지교육의 적극성 이외에도 처벌수준의 적정성이나 감사 빈도, 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 등 다수의 제도적 차원 변수들은 허위출장과 미승인 겸직 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행위를 억제하는 제도적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조직문화적 차원의 변수들 중에서는 조직정치 변수가 유형들 간에 상당히 일관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연, 지연, 친소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의사결정 문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적인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윤리나 절차 등의 준수보다 우선시하게 하여, 부패행위에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여부에 관한 결정일 때, 주요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개인적 특성에서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이 대

체적으로 신고 여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봉사동기도 일부 부패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과정에서의 사측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대응이 대부분의 부패행위 신고 여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적 차원의 변수들은 대체적으로 종속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공공조직은 모범적인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다른 조직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조직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윤리성을 갖추어 가는 일 역시 그 범주에 속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이 전반적으로 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밝혀진 것은 우선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이를 개선해 가기 위한 단초로 적극적인 부패방지교육, 신뢰성 있는 처리과정, 처벌의 적정성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윤리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조직 차원의 시스템을 잘 구비해 가는 것에 더해 교육훈련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공공봉사동기를 고취해 간다면, 이는 보다 나은 윤리성의 확보로 보상받을 것이다. 공공기관 윤리와 관련해 최근 발생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부패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들의 직업적 자부심과 윤리성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조직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그러한 노력에 작게나마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18 「공공기관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논의]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2022년 7월 20일, ‘저가 주택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함¹⁾

-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주택문제 관련 세금 인센티브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목적의 공청회임²⁾

- 공청회에서 미국 민주당 상원위원인 Ron Wyden은 미국 전역에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주택구매 비용과 임대비용이 상승하였다고 말하며, 양질의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위해 2021년 9월 발의한 법안인 DASH(Decent, Affordable, Safe Housing for All) ACT³⁾의 중요성을 강조함

■ Ron Wyden이 2021년 9월 23일 발의한 법안인 DASH(Decent, Affordable, Safe Housing for All)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 및 저렴한 주택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임⁴⁾

- 주택 공급 기준과 세법 개정을 통한 주택 생산의 확장을 내용으로 함
- 5년 이상의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선택 바우처를 발급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LIHTC)를 강화하였음
 - LIHTC는 민간 부문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다가구 주택 개발에 참여를 위한 비과세 채권 자금 조달 임계값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추었음
- 중위소득 주택 세액공제(MIHTC)를 제시함
 - 해당 지역 중위소득의 60%에서 100%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세입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공제를 제안함
- 첫 주택 구매의 경우 계약금의 세액공제를 제안함
 - 법에서 인정되는 주택의 최대 구매가격(7만 5천 달러)의 20%에 해당하는 1만 5천달러를 한도로 계약금에 대해 세액공제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캐나다 - 사치세 도입]

■ 2022년 4월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2022년 6월

1) COMMITTEE ON FINANCE, “The Role of Tax Incentives in Affordable Housing,” <https://www.finance.senate.gov/hearings/the-role-of-tax-incentives-in-affordable-housing>, 검색일자: 2022. 7. 26.
 2) IBFD, US Senate Finance Committee Discusses Affordable Housing Tax Incentives in Public Hearing,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1_us_2.html, 검색일자: 2022. 7. 26.
 3) CONGRESS.GOV, “DASH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2820>, 검색일자: 2022. 7. 26.
 4) COMMITTEE ON FINANCE, “Wyden Announces New Bill to End Homelessness and Ensure Affordable Housing for All,” <https://www.finance.senate.gov/chairmans-news/wyden-announces-new-bill-to-end-homelessness-and-ensure-affordable-housing-for-all#:~:text=Washington%2C%20D.C.%20%E2%80%93%20Senate%20Finance%20Committee,and%20expand%20homeownership%20opportunities%20for>, 검색일자: 2022. 7. 26.

23일 왕실의 승인을 얻어 캐나다는 10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새 고급자동차 및 항공기 판매와 25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새 보트 또는 요트 판매에 대해 사치세를 부과함⁵⁾

<표 1> 고급자동차에 부과되는 사치세 계산 예시

(단위: 캐나다달러)

구매한 차	가격
소매점에서의 가격	90,000
포함된 에어컨 소비세(\$100)	100
자동 운전 시스템 옵션	8,000
업그레이드된 오디오 시스템	4,000
딜러가 설치한 휠 업그레이드	2,000
화물/배송 전 검사	2,000
사치품 목적의 총 가격	106,000
(a) 사치세: 총 가치의 10%	10,600
(b) 사치세: \$100,000(임계값) 초과 가치의 20%	1,200
확정 사치세: Min[(a), (b)]	1,200
소계	107,200
GST	5,360
합계	112,560

출처: canada.ca, “Consultation on the Select Luxury Goods Tax,”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programs/consultations/2021/consultation-proposed-luxury-tax/select-luxury-goods-tax.html>, 검색일자: 2022. 8. 9.

- 도입되는 사치세는 2022년 9월 1일에 시행될 예정⁶⁾이며, 기존 개별 소비세 외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임
 - 법이 시행되면 소매가 기준 10만캐나다달러⁷⁾를 초과하는 새 고급자동차 및 항공기와 25만캐나다달러⁸⁾를 초과하는 새 보트에 부과되는 사치세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됨
 - 임계값을 초과하는 가치의 20%
 - 고급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전체 가치의 10%
-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독일 - DAC7 시행 및 「조세통칙법」 개정 법안 발표]

- 독일재무부는 2022년 7월 12일 EU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 시행과 「조세통칙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법안을 발표함^{9), 10)}
- 동 법안은 EU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¹¹⁾에 대한 이행을 위해 독일 내 법제화를 위한 것이며, 이 외 「조세통칙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함
- DAC7은 기존 정보 교환 및 협력 범위에 디지털

5) IBFD, “Canada 2022 Budget Introduces Luxury Tax, Other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29_ca_2.html, 검색일자: 2022. 7. 26.

6) IBFD, “Finance Minister Recommends Implementing Luxury Tax on Aircraft on 1 September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2_ca_1.html, 검색일자: 2022. 7. 26.

7)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6만원임

8)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5,374원임

9) 독일재무부,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21/514 des Rates vom 22. März 2021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11/16/EU über die Zusammenarbeit der Verwaltungsbehörden im Bereich der Besteuerung und zur Modernisierung des Steuerfahrensrechts,”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2-07-12-Gesetz-zur-Umsetzung-der-Richtlinie-EU-2021-514/0-Gesetz.html, 검색일자: 2022. 7. 22.

10)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Bill on Implementation of DAC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15_de_1.html, 검색일자: 2022. 7. 22.

11) DAC7은 EU 조세행정협력지침(EU Directive 2011/16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in the EU(“DAC”))의 7번째 수정안을 뜻하는 것임



플랫폼 사업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며, 독일의 법안 역시 DAC7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EU 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등록 판매자(Anbieter)의 소득 정보 등을 수집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관련 정보를 EU 회원국의 과세당국과 서로 공유할 의무가 있음
 -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Anbieter)에게 원천징수 하거나 부과한 수수료와 관련된 소득으로,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가 얻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부동산 및 운송수단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보고대상임
 - 플랫폼 사업자의 첫 번째 데이터 보고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 EU 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있는 EU 회원국에 플랫폼을 등록해야 하고 판매자의 소득정보 등을 보고해야 함
- 「조세통칙법(Abgabenordnung)」개정으로는, 세무조사 시 부과제척기한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2025년부터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

고, 미준수 시 하루 최대 100유로(최대 100일)¹²⁾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¹³⁾

<자료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스위스 - 글로벌 최저한세수 사용계획 발표]

- 2022년 6월 23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거둔 수입을 연방정부에 25%, 주(Cantons)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75%를 할당하여 사용할 것을 발표함¹⁴⁾
 - 해당 예산을 주정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국가 재정형평지출에 충당하여 스위스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 밝힘
 - 2022년 1월 12일 스위스 연방의회는 20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15%) 규정을 시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¹⁵⁾
 -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2023년 6월 헌법 개정에 대한 전국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며, 스위스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최대 25억프랑¹⁶⁾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¹⁷⁾
- <자료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12) 2022년 8월 1일 유로 원 환율(1유로=1,339.32원) 기준 약 13만 4천원이며, 최대 벌금은 약 1,340만원임

13) Deloitte, "MOF publishes DAC 7 draft implementation bill," <https://www.taxathand.com/article/25661/Germany/2022/MOF-publishes-DAC-7-draft-implementation-bill>, 검색일자: 2022. 7. 22.

14) 스위스의회, Confederation arranges for implementation of OECD minimum tax rate in Switzerland, https://www.efd.admin.ch/efd/en/home/the-fdf/nsb-news_list.msg-id-89425.html, 검색일자: 2022. 7. 21.

15) 주요국의 조세동향(22-01호), "스위스 - 디지털세 필라2 최저한세 이행 결정,"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3688Wn0_0&rs=/viewer/result/kiTrend/202202///, 검색일자: 2022. 7. 21.

16) 2022년 7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3조 3,699억원임

17) SWISSINFO, Switzerland details revenue split for global corporate tax rate, <https://www.swissinfo.ch/eng/switzerland-details-revenue-split-for-global-corporate-tax-rate/47698274>, 검색일자: 2022. 7. 21.

[룩셈부르크 - 에너지 세액공제 법안 시행]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2년 6월 29일, 에너지 세액공제(Credit d'Impot Énergie)를 도입하는 법안을 공포함¹⁸⁾
- 개인사업자·근로자·연금수령자의 2022 및 2023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하여 에너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 법안은 2022년 6월 30일부터 발효됨
- 법안은 에너지 관련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연대 패키지’의 일부로, 세액공제액은 소득에 연동됨

- 세액공제액은 개인사업자·근로자·연금수령자의 소득구간별 소득액에 기초하여 산출됨
- 개인사업자는 연 단위로 산출하고 2023년에 산출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며, 근로자·연금수령자는 월 단위로 산출하고 2023년에도 기존 방식이 유지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표 2> 2022년 룩셈부르크 에너지 세액공제

(단위: 유로)

구분	소득		공제액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 ¹⁾	2022년	936~44,000	$N^2) \times 84$
		44,001~68,000	$N \times 84 - (\text{순 소득액} - 44,000) \times (N \times 8 / 24,000)$
		68,001~100,000	$N \times 76 - (\text{순 소득액} - 68,000) \times (N \times 76 / 32,000)$
	2023년	936~44,000	252
		44,001~68,000	$252 - (\text{순 소득액} - 44,000) \times (24 / 24,000)$
		68,001~100,000	$228 - (\text{순 소득액} - 68,000) \times (228 / 32,000)$
근로자 ³⁾	78~3,667	84	
	3,668~5,667	$84 - (\text{월 총급여액} - 3,667) \times 8 / 2,000$	
	5,668~8,334	$76 - (\text{월 총급여액} - 5,667) \times 76 / 2,667$	
연금수령자 ³⁾	78~3,667	84	
	3,668~5,667	$84 - (\text{월 수령액} - \text{EUR } 3,667) \times 8 / 2,000$	
	5,668~8,334	$76 - (\text{월 수령액} - \text{EUR } 5,667) \times 76 / 2,667$	

주: 1) 연 단위 산출

2) N = 급여, 임금, 연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한 첫 번째 조정이 시작되는 2022년 5월부터 12월 사이의 개월 수

3) 월 단위 산출, 2022년과 2023년의 공제액 계산 방법은 동일

출처: Journal officiel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Loi du 29 juin 2022,” <https://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22/06/29/a317/jo>, 검색일자: 2022. 7. 28.

18) Journal officiel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Loi du 29 juin 2022,” <https://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22/06/29/a317/jo>, 검색일자: 2022. 7. 28.; IBFD, “Luxembourg Enacts Energy Tax Credit,” 2022. 7.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1_lu_2.html, 검색일자: 2022. 7. 13.



[이탈리아 -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 긴급 조치 법률 전환]

- 이탈리아 의회는 2022년 7월 15일 에너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긴급 조치들을 법률(Law Decree No. 50/2022)로 전환함¹⁹⁾
 -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진 긴급 조치들에 해당하며, 세액공제 확대와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세율 감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기업에 발생하는 에너지 관련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천연가스의 공급에 적용되던 감면 세율이 유지됨
 -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은 적격 기업은 특정 조건에 따라 2022년 1분기에 소비된 천연가스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2년 2분기에 소비된 천연가스 비용에 대해 적격 기업에 부여된 세액공제가 기존 20%에서 25%로 증가함
 -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 외에도 적격 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2022년 2분기에 소비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됨
 - 적격 운송 기업은 부가가치세 순세액에 대해 2022년 1분기 연료구매에 발생한 비용의 28%, 적

격 어업 기업은 2022년 2분기 연료구매에 발생한 비용의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국내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공급에 2021년 4사분기부터 적용되어온 5%의 부가가치세 감면 세율이 2022년 3사분기 발생분에 대해서도 유지됨
 -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와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 한도가 인상됨
 -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무형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취득 비용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20%에서 50%로 인상됨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혹은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진, 판매자가 관련 주문을 수락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문 금액의 최소 20%가 실제로 지불된 투자건에 한함
 - 적절한 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영세기업의 경우 기존에 50%에서 70%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됨
 - 이 밖에도 적격 개인사업자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부동산 내진 설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해당 작업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전체 작업의 최소 30% 이상이 진행되어야 함
-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19) IBFD, "Parliament Enacts Urgent Measures to Support Enterprises Affected by Increased Energy Costs," (21 Jul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7-21_it_1, 검색일자: 2022. 7. 25.

[네덜란드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발표]

■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2022년 7월 7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함²⁰⁾

- 전기, 휘발유, 디젤 및 LPG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함
-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에서 9%로 인하하였으며, 기업은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 시 감면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²¹⁾
 - 에너지 공급업체는 공급받는 자의 결제 시점과 상관없이, 감면 기간 동안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환급을 신청한 에너지 공급업체는 신청기간 동안 다른 에너지 공급계약에도 동일한 매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면기간 동안 선택에 대한 포기가 불가능함²²⁾

- 휘발유 및 경유 등에 대한 소비세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 인하함
 - 휘발유의 소비세는 리터당 82센트에서 21% 감소하여 리터당 17.3센트 인하하였으며, 경유는 11.1센트, LPG는 4.1센트 인하된 소비세가 적용됨²³⁾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중국 - 새로운 인지세법 시행 규칙 발표]

■ 중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2년 7월 1일, 새로운 인지세법 시행 규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시 [2022] No. 22를 발표함²⁴⁾

- 새로운 인지세법 시행 규칙은 1988년 제정된 임시 규칙(Provisional Regulations)을 대신하는 것으로,²⁵⁾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나,²⁶⁾ 납세의무자, 인지세 과세범위, 세무행정 등에 일부가 추가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신탁대출 약정(entrusted loan agreement)에서 인

20) News IBFD, "Netherlands Enacts Tax Reductions to Counter Soaring Energy Prices," 2022. 7.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7_n_3.html, 검색일자: 2022. 7. 20.

21) News IBFD, "Tax Authority: Entrepreneurs May Apply for VAT Refunds Using Temporary Reduced VAT Rate at Time of Signing Energy Contract," 2022.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7-14_n_1, 검색일자: 2022. 7. 20.

22) 네덜란드 법원, "Omzetbelasting, teruggaaf van omzetbelasting bij kortingen in verband met de tijdelijke toepassing verlaagd btw-tarief voor energie," <https://wetten.overheid.nl/BWBR0046909/2022-07-14>, 검색일자: 2022. 7. 20.

23) 네덜란드 정부, "Verlaging brandstofaccijns gaat ook gelden voor LPG en LNG," <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22/03/17/verlaging-brandstofaccijns-gaat-ook-gelden-voor-lpg-en-lng>, 검색일자: 2022. 7. 20.

24) IBFD, "China Issues Rules Implementing New Stamp Duty Law," 2022.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5_cn_1.html, 검색일자: 2022. 7. 25.

25) S. (Shiqi) Ma, China (People's Rep.) - Corporate Taxation sec. 14.3. Stamp duty,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25 July 2022).

26) EY, "China's new Stamp Duty Law is now in effect," 2022. 7. 18., https://www.ey.com/en_gl/tax-alerts/china-s-new-stamp-duty-law-is-now-in-effect, 검색일자: 2022. 7. 25.



지세 납세의무자는 자금을 빌려주는 시중은행 등이 아니라, 고객 등 자금을 빌리는 위탁자와 수탁자임²⁷⁾

- 이러한 신탁대출 약정이 경매로 발생한 경우에도 경매인(auctioneer)은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지 않음

■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 또는 증서가 역외에서 체결되거나 작성되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함²⁸⁾

- 소재지가 중국인 부동산 관련 계약 또는 증서
- 중국 거주 기업이 소유한 지분 관련 계약 또는 증서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관련 계약 또는 증서
 - 단,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중국 거주자이며,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중국 거주자에게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판매했지만, 거주자가 역외에서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함
- 중국 거주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계약 또는 증서
 - 단,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함

■ 실현되지 않은 계약 또는 증서에 대해 납부한 인지세와 납세의무자의 과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인지세에 대해서 환급 불가함²⁹⁾

- 또한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 또는 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계약 또는 증서에 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또는 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인도 -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특별 추가 소비세 과세]

■ 인도 재무부는 2022년 상반기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도 국내 원유 생산자들이 초과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로서 특별 추가 소비세를 과세하고자 함³⁰⁾

-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 톤당 1만 7천루피³¹⁾의 특별 추가 소비세를 부과하며, 경유의 경우 리터당 11루피,³²⁾ 항공유의 경우 리터당 4루피³³⁾를 부과함³⁴⁾
- 특별 추가 소비세는 직전 회계연도 연간 생산량이 200만톤 미만인 소규모 생산자는 부과가 면제되며 추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작년

27) IBFD, "China Issues Rules Implementing New Stamp Duty Law," 2022.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5_cn_1.html, 검색일자: 2022. 7. 25.

28) 상동

29) 상동

30) 인도 재무부,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38455>, 검색일자: 2022. 7. 25.

31) 2022년 0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만 7,726원임

32) 2022년 0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0원임

33) 2022년 0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원임

34) CNBC, "India cuts windfall tax on diesel, aviation fuel exports," <https://www.cnbc.com/2022/07/20/india-cuts-windfall-tax-on-diesel-aviation-fuel-exports.html#:~:text=Windfall%20tax%20on%20diesel%20and,took%20effect%20on%20July%202020.>, 검색일자: 2022. 7. 25.

을 초과하여 생산된 신규 물량에 대해 특별 추가 소비세를 면제함

■ 해당 특별 추가 소비세의 부과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최초 부과 시에는 국내 판매 원유와 수출분 휘발유 및 경유, 항공유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³⁵⁾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7월 20일 기존의 국내 판매 원유, 경유 및 항공유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율을 인하하고 수출용 휘발유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를 폐지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재차 시행을 연기하는 것임

- 7월 이후로 연기된 탄소세의 시행은 2022년 내 시행임은 변함이 없으나 구체적인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음

■ 2022년 시행될 예정인 인도네시아의 탄소세는 화력발전소 대상의 배출 제한을 기반으로 한 과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인도네시아 - 탄소세 시행 연기]

■ 인도네시아 재경부는 당초 7월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탄소세 시행 계획을 연기함³⁶⁾

- 인도네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이유로 세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국가 경제를 글로벌 리스크 확산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함
- 인도네시아의 탄소세는 2021년 10월 통과된 기존 법률에 따르면 2022년 4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입법 미비 등으로 7월로 연기되었고, 뒤이은

[뉴질랜드 - 유류세 인하 내년 초까지 재연장]

■ 2022년 7월 17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8월 16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³⁷⁾

- 지난 2022년 3월 14일, 뉴질랜드 정부는 유류세를 리터당 25센트³⁸⁾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2022년 6월 15일까지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 이후 2022년 5월,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유류세 인하는 2022년 8월 16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35) 인도 재무부,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38455>, 검색일자: 2022. 7. 25.

36) Bloomberg Tax, "Indonesia Delays Carbon Tax Implementation: Ministry,"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DBVJJ4000000?>, 검색일자: 2022. 7. 26.

37) IBFD, Government Extends Transport Tax Relief Measures, 2022.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1_nz_1.html, 검색일자: 2022. 7. 21.

38)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시 약 207원임



■ 이와 같은 뉴질랜드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류값 급등을 완화하기 위함임

-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율은 32년 만의 최고치인 7.3%를 기록하였으며, 가솔린 가격은 32%, 디젤 가격은 74% 상승하였음³⁹⁾
- 뉴질랜드 정부는 금번 조치로 휘발유 40리터 주유 시 약 11뉴질랜드달러,⁴⁰⁾ 60리터 주유 시 약 17뉴질랜드달러⁴¹⁾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2분기 물가상승률이 0.5%p 하락할 것이라고 추산함⁴²⁾

■ 금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5억 8,900만뉴질랜드달러⁴³⁾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OECD - BEPS 프로젝트 필라1 Amount A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2년 7월 11일, 필라1 Amount A에 관

한 모델규정 초안이 포함된 진행상황 보고서를 공개함⁴⁴⁾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2018년 12월 필라1·2 개념을 확정하여 2020년 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를 발표하였고, 2021년 10월 필라1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 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⁴⁵⁾
- 필라1 Amount A에 관한 모델규정 초안에는 범위, 과세연계점, 매출귀속기준, 과세권 배분, 이중과세 제거의 내용이 담김

■ 필라1 Amount A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것으로, 주요 규정들은 디지털경제 태스크포스(TFD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에 의하여 개발되었음

- 연결매출액 및 이익률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고, 과세연계점 및 매출귀속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이 배분됨
-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⁴⁶⁾ 이상이고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임(scope rules)

39) 2022년 6월 30일 종료되는 연도 기준임

40)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시 약 9,114원임

41)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시 약 14,085원임

42) CNBC, "New Zealand extends fuel excise duty cut until end-Jan to give inflation relief," 2022. 6. 17., <https://www.cnb.com/2022/07/17/new-zealand-extends-fuel-excise-duty-cut-until-end-jan-to-give-inflation-relief.html>, 검색일자: 2022. 8. 2.

43) 2022년 7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시 약 4,809억원임

44) OECD,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OECD invites public input on the Progress Report on Amount A of Pillar One," <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the-progress-report-on-amount-a-of-pillar-one.htm>, 검색일자: 2022. 7. 13.

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21-10호)』, 2021, p. 27.

46) 2022년 7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조 5,712억원임

- 과세연계점을 충족하는 경우(nexus rule), 즉 매출귀속기준(revenue sourcing rules)에 따라 100만유로⁴⁷⁾ 이상의 매출이 귀속되는 국가에 필라1 과세권이 배분되며, 원칙적으로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귀속됨
- 연결재무제표 등 Amount A 산정 목적으로 사용될 이익 계산 방법을 제공함(tax base rules)
- 과세권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내국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 국가들은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함
 - 통상이익(매출의 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 매출액에 비례하여 시장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고 이미 과세하고 있는 국가는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하는 방식으로 조정됨(profit allocation rules)
 -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에 이중과세제거 부담의무를 할당하고, 할당받은 국가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하여야 함(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rules)

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것임

- 2023년 상반기에 다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3년으로 예정되었던 시행시기를 2024년으로 연기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서면 공청회를 통해 필라1 Amount A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2022년 10월 말

47) 2022년 7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2,940만원임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추가 거시금융지원 발표 (2022. 7. 1.)¹⁾

- 집행위는 거시금융지원(MFA)*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10억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예외적이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EU 인접국, 후보-잠재후보국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장기 대출 혹은 보조금 형태로 구성되며, 수혜국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IMF 개혁 이행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²⁾

- 우크라이나의 거시경제 안정과 전반적인 회복력 향상을 목표로, 저리 장기대출 형태로 지원될 예정

■ EU 이사회, 크로아티아 유로지역 가입 승인(2022. 7. 12.)³⁾

- EU 이사회는 크로아티아의 유로지역 가입에 대

한 최종 법적 절차를 채택

-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 1일 유로화를 공식 채택하면, 2015년 리투아니아에 이어 20번째 유로 지역 가입국이 됨

■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⁴⁾ 2021 발표(2022. 7. 12.)⁵⁾

* 동 보고서는 EU 공공 재정에 관한 주요 재정정책 동향 및 연구 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음. 아래 내용은 1장 EU의 경제·재정 상황 및 ECB의 통화 전략 검토를 정리함⁶⁾

- 유로지역 경제는 장기적이고 강건한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면
 -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고 물류 및 공급망 병목 등 역풍 요인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공급망 장애를 일으키고 원자재 가격 압력을 증가시킴
 - 집행위 봄 전망⁷⁾에 따르면 유로지역 경제 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2.3%로 겨울 전망(각각 4.0%, 2.7%) 대비 하향 조정됨
 - 인플레이션 전망은 2022년 6.1%, 2023년

1) EU 집행위,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first €1 billion tranche of the new macro-financial assistance for Ukraine, 2022. 7. 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4264, 검색일자: 2022. 7. 20.

2) 최근 대규모 지원 사례는 코로나19 2020년 4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 10개국에 총 30억유로를 지원한 것이며, 현재 대부분 국가에 지급 완료됨.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international-economic-relations/macro-financial-assistance-mfa-non-eu-partner-countries_en, 검색일자: 2022. 7. 20.

3) EU 이사회, Croatia set to join the euro area on 1 January 2023: Council adopts final required legal acts, 2022. 7. 1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7/12/croatia-set-to-join-the-euro-area-on-1-january-2023-council-adopts-final-required-legal-acts/>, 검색일자: 2022. 7. 20.

4)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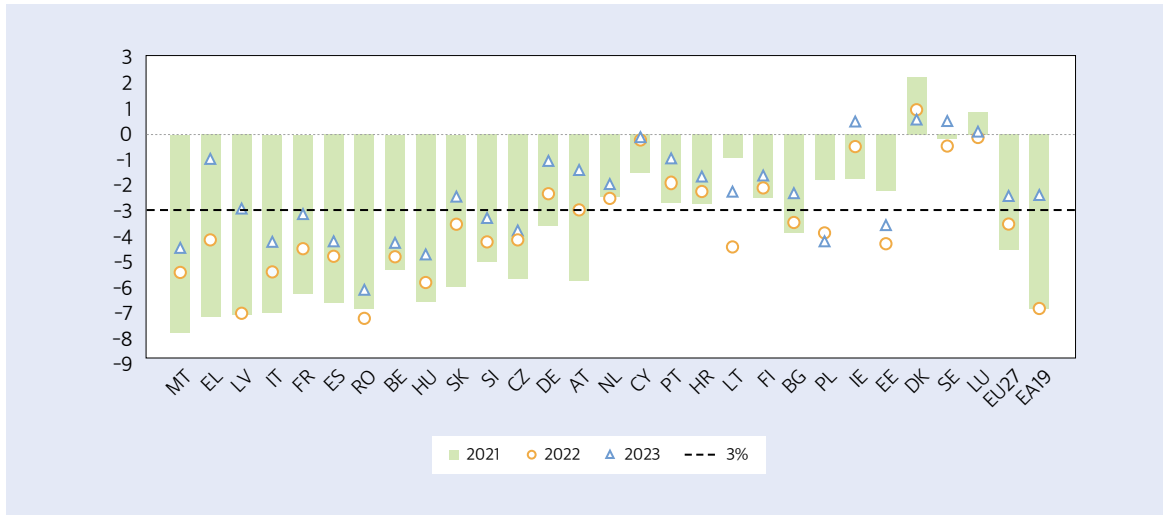
5)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1, 20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report-public-finances-emu-2021_en, 검색일자: 2022. 7. 20.

6)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1은 1~4장으로 이뤄져 있음. 2장에서는 EU 재정 감독 동향을 다루고 있으며, 3장에서는 이자율과 성장률 간의 차이(이자율-성장률)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재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4장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준칙이 EU 재정준칙 준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다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혹은 향후 게시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을 참고 바람(<https://www.kipf.re.kr/cfa/>)

7)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2를 참고 바람

[그림 1] EU 회원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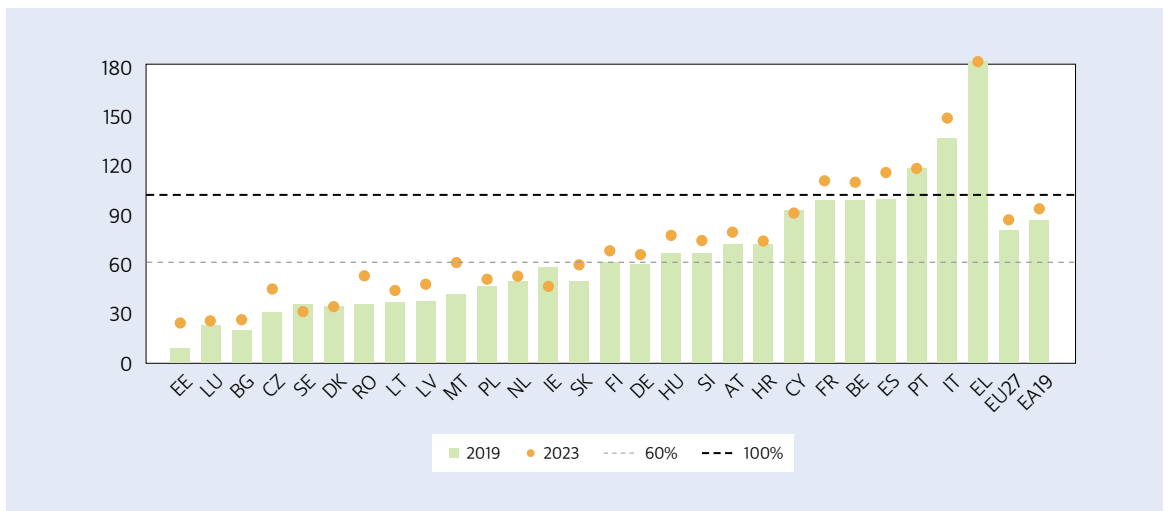


주: IT 이탈리아, HR 크로아티아, SI 슬로베니아, LT 리투아니아, PT 포르투갈, EL 그리스, ES 스페인, FR 프랑스, CZ 체코, MT 몰타, SE 스웨덴, LV 라트비아, AT 오스트리아, BG 불가리아, CY 키프로스, BE 벨기에, DE 독일, SK 슬로바키아, DK 덴마크, HU 헝가리, FI 핀란드, RO 루마니아, PL 폴란드, NL 네덜란드, IE 아일랜드, EE 에스토니아, LU 룩셈부르크, EU27 유럽연합, EA19 유로지역

출처: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1, 2022, Graph I.1.4.

[그림 2] EU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

(단위: GDP 대비 %)



주: [그림 1] 주 참조

출처: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1, 2022, Graph I.1.7.



2.7%로 겨울 전망(각각 3.5%, 1.7%) 대비 크게
상향 조정됨

■ 재정 상태는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나, 빠른 경제
회복과 재정수입 개선에 힘입어 당분간 개선될
전망

- GDP 대비 재정 적자는 경제회복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조치가 축소됨에 따라 2021년 5.1%
에서 2022년 3.7%, 2023년 2.3%로 감소
- 재정 기조는 주로 회원국 자체 조달을 통한
순기초경상지출 증가에 영향을 받아 2020~
2022년 확장적으로 유지되다가, 2023년에는
긴축적으로 전환될 전망
- GDP 대비 채무는 2020년 사상 최고치(99.2%)
기록 후 낮은 이자율과 높은 성장률(favourable
interest rate-growth differential), GDP 디플레
이터 상승에 힘입어 2023년 92.7%까지 하락할
전망([그림 1], [그림 2] 참조)
- 한편 2021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
한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검토 결과⁸⁾
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 관점에
서 정리
- 2%의 대칭적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채택하
고 야심찬 기후 변화 행동 계획에 대해 동의하
며, 특히 정책 조합과 관련해 비전통적 통화정

책이 실효금리 하한 상황에서 정책수단으로
유효하며 재정정책이 중요한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

- 유로지역 회원국의 비대칭적인 채무 수준이
통화정책 파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채무
감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적절한 재정·구조정
책이 필요하고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이 중요
하다고 강조

■ EU 이사회, 2023년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2022. 7. 13.)⁹⁾

* 집행위는 지난 6월 1,856억유로(승인기준) 규모의 2023년 EU 예
산안을 발표.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2022를 참고 바람

- (심의 방향) 2023년 EU 예산은 우크라이나 위
기 및 인플레이션 등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prudent) 접근해야 하며, 지출 상
한 내 충분한 여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규모¹⁰⁾) 2023년 EU 예산안으로 승인기준
1,840억유로, 지급기준 1,657억유로를 채택해
집행위 안 대비 각각 16억유로, 5억유로 감액
-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분야가 각각 12억
유로, 4억유로 감소해 감액의 대부분을 차
지했으며, 그중 EU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¹¹⁾이 각각 7억유로, 2억유로
감액됨

8)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8월호, 2021을 참고 바람

9)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3: Council agrees its position, 2022. 7. 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7/13/eu-budget-for-2023-council-agrees-its-position/>, 검색일자: 2022. 7. 20.

10)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혹은 그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
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함

11) 기후 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 EU의 경쟁력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기후 변화 적응, 암, 해양과 강 복원, 기후 중립 및 스마트 도시, 토양 회복 등
5개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

-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하위분야와 파트너 및 세계 분야, 기타 특수 기금은 원안 유지됨
- (부대의견) 집행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회에 행정 예산 절감을 요청
- 현재 및 지난 다년도 재정 체계(특히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하위분야와 농촌개발 부문)의 프로그램 이행을 계속 면밀하고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2023년 지급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
- 이사회는 이번 입장 채택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9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
-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연동임금(automatic salary update, automatic wage indexation)의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행정 지출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
- 한편 다년도 예산의 행정분야 지출 상한은 모든 EU 기구의 직원 수를 안정화하고 행정 지출을 감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신규 및 증원 계획은 행정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계
- (향후 일정) 9월 6일까지 공식 서면 절차를 완료한 후, 이후 의회와 심의·조정을 진행할 예정

<표 1> 2023년 집행위 EU 예산안과 이사회 입장 비교

(단위: 백만유로)

구분	승인기준			지급기준		
	집행위 예산안 (A)	이사회 입장 (B)	차이 (B-A)	집행위 예산안 (A)	이사회 입장 (B)	차이 (B-A)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568	20,333	-1,235	20,901	20,523	-378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0,087	69,849	-238	55,840	55,809	-32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62,923	62,923	0	49,131	49,131	0
2b. 회복력 및 가치	7,164	6,926	-238	6,709	6,678	-32
3. 천연자원 및 환경	57,223	57,178	-45	57,445	57,439	-6
4. 이주 및 국경관리	3,727	3,677	-50	3,067	3,017	-50
5. 안보 및 국방	1,901	1,889	-12	1,111	1,110	-2
6. 파트너 및 세계	16,782	16,782	0	13,774	13,774	0
7. 유럽 공공 행정	11,449	11,386	-63	11,449	11,386	-63
기타 특수 기금	2,855	2,855	0	2,680	2,680	0
합계	185,591	183,949	-1,641	166,268	165,738	-530

출처: EU 이사회, *Draf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3: Council position(technical annexes)*, 2022. 7. 12.,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1075-2022-ADD-2/en/pdf>, 검색일자: 2022. 7. 20.



<표 2>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여름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2년 7월 여름 전망		2022년 5월 봄 전망		2022년 7월 여름 전망		2022년 5월 봄 전망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벨기에	2.3	1.3	2.0	1.8	9.4	2.9	7.8	1.9
독일	1.4	1.3	1.6	2.4	7.9	4.8	6.5	3.1
에스토니아	1.6	1.9	1.0	2.4	17	4.7	11.2	2.5
아일랜드	5.3	4.0	5.4	4.4	7.3	3.3	6.1	3.1
그리스	4.0	2.4	3.5	3.1	8.9	3.5	6.3	1.9
스페인	4.0	2.1	4.0	3.4	8.1	3.4	6.3	1.8
프랑스	2.4	1.4	3.1	1.8	5.9	4.1	4.9	3.1
이탈리아	2.9	0.9	2.4	1.9	7.4	3.4	5.9	2.3
키프로스	3.2	2.1	2.3	3.5	7.0	3.3	5.2	2.7
라트비아	3.9	2.2	2.0	2.9	15.5	6.0	9.4	3.5
리투아니아	1.9	2.5	1.7	2.6	17.0	5.1	12.5	3.0
룩셈부르크	2.6	2.1	2.2	2.7	8.5	3.0	6.8	2.3
몰타	4.9	3.8	4.2	4.0	5.6	3.3	4.5	2.6
네덜란드	3.0	1.0	3.3	1.6	9.4	3.3	7.4	2.7
오스트리아	3.7	1.5	3.9	1.9	7.4	4.4	6.0	3.0
포르투갈	6.5	1.9	5.8	2.7	6.8	3.6	4.4	1.9
슬로베니아	5.4	1.0	3.7	3.1	7.6	4.9	6.1	3.3
슬로바키아	1.9	2.7	2.3	3.6	10.5	8.2	9.8	6.8
핀란드	1.8	1.2	1.6	1.7	6.4	2.8	4.5	2.3
유로지역	2.6	1.4	2.7	2.3	7.6	4.0	6.1	2.7
불가리아	2.8	2.3	2.1	3.1	12.5	6.8	11.9	5.0
체코	2.3	2.0	1.9	2.7	13.9	5.8	11.7	4.5
덴마크	3.0	1.2	2.6	1.8	7.5	3.4	5.1	2.7
크로아티아	3.4	2.9	3.4	3.0	8.2	3.6	6.1	2.8
헝가리	5.2	2.1	3.6	2.6	11.8	7.6	9.0	4.1
폴란드	5.2	1.5	3.7	3.0	12.2	9.0	11.6	7.3
루마니아	3.9	2.9	2.6	3.6	11.1	7.2	8.9	5.1
스웨덴	1.3	0.8	2.3	1.4	6.6	3.6	5.3	3.0
EU 27개국	2.7	1.5	2.7	2.3	8.3	4.6	6.8	3.2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2, 2022, Table 1&3.

- EU 집행위, 회원국의 2022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2022. 7. 13.)¹²⁾
 - * 동 보고서는 2022년 봄 EU 회원국들이 제출한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SCPs)¹³⁾과 EU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EU 차원의 재정 전망, 재정 기초, 정책 조합 등을 검토
- (2021년 평가) 2021년 EU 경제는 EU 차원의 지침 완화와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강건한 회복을 보였으며, 경제회복에 따라 재정 지표들도 개선됨
- (2022~2023년 전망) 2022~2023년 EU 경제는 2021년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재정 지표는 2022~2023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재량 지출) 주로 코로나19 지원, 경제회복 지원, 에너지 관련 조치가 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각 규모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전망
- (회원국별 재정 기초¹⁴⁾) EU 예산과 회원국 예산을 합한 EU 회원국의 재정 기초는 2022년 지원적(supportive)이다가 2023년에는 긴축적으로 전환될 전망
- (유로지역의 재정 기초) 유로지역은 단일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정책 조합이 중요

- EU 집행위, 2022년 여름 경제전망 발표(2022. 7. 14.)¹⁵⁾
 - * EU에서는 연 4회 경제 전망(겨울 전망, 봄 전망, 여름 전망, 가을 전망)을 발표. 봄과 가을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전망치를 다루고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업데이트함
- (경제) 유로지역과 EU 경제는 2022년 각각 2.6%, 2.7%의 성장세를 보인 뒤 2023년 각각 1.4%, 1.5%로 둔화될 전망
- (물가) 유로지역과 EU의 물가(HICP) 상승률은 2022년 각각 7.6%, 8.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3년 각각 4.0%, 4.6%로 하락할 전망
- (위험) 경제 및 물가 전망 위험은 부정적 측면이 우세하며, 전쟁 진행 상황, 특히 가스 공급 영향에 크게 의존



IMF

- IMF 집행이사회, 미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2. 7. 12.)¹⁶⁾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간 감시 활동

12)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an Overview, with an Assessment of the Euro Area Fiscal Stance, 20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2-stability-convergence-programmes_en”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2-stability-convergence-programmes_en, 검색일자: 2022. 7. 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혹은 향후 게시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을 참고 바람(<https://www.kipf.re.kr/cfa/>)

13) 매년 4월, EU 회원국은 향후 3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유로 국가들은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 비유로 국가들은 수렴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s)에서 재정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함

14) 재정 기초는 잠재 GDP를 감안한 기초 재정 수지의 변화로 측정. 코로나19 임시 긴급 지원, 실업 급여, 이자지출, 예외적 조치는 제외하며, EU 지원으로 조달한 지출은 포함

15)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2, 20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summer-2022_en, 검색일자: 2022. 7. 20.; _____, *Summer 2022 Economic Forecast: Russia's war worsens the outlook, 2022. 7.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4511, 검색일자: 2022. 7. 20.

16)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7/12/pr22254-imf-executive-board-concludes-2022-article-iv-consultation-with-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2. 7. 13.



-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통화 정책 및 부양책을 통해 COVID-19 충격에서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은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고, 생산량은 현재 팬데믹 이전 추세에 근접했으며, 2020년 말 이후 8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그러나 수요의 빠른 회복과 에너지 가격 상승, 지속적인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크게 가속화되며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된다면 연준은 더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경제를 더욱 둔화시킬 수 있음
-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3월에 통과된 1조 9천억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인해 전체 정부 적자는 GDP의 9% 가까이 증가
 - 이후 재정적자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국가채무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현저히 높으며 중기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

- 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급속한 수요 반등이 인플레이션의 급증을 동반하여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임금과 물가 상승을 신속하게 늦추는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는 매우 효과적이며 적절하다고 평가
- IMF 이사회는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머지 개혁 의제를 통과시켜 경제의 공급 측면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력 참여, 세수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및 이민 정책의 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
 - 또한 지난 5년 동안 도입된 무역 제한과 관세 인상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다자무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

<표 3> 미국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20	2021	전망	
			2022	2023
실질 GDP(%)	-3.4	5.7	2.3	1.0
실업률(%)	8.1	5.4	3.7	4.6
물가상승률(CPI inflation, Q4/Q4, %)	1.2	6.7	6.6	1.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GDP 대비 %)	-14.5	-10.9	-4.8	-5.4
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134.5	128.1	122.8	123.8
10년물 국채 수익률(%)	0.9	1.4	3.1	4.1
경상수지(GDP 대비 %)	-3.0	-3.7	-3.8	-3.1

출처: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2022. 7. 12. 편집

■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예바 총재,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전망에 G20 대응 촉구 성명(2022. 7. 16.)¹⁷⁾

-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은 크게 어두워졌고 불확실성이 예외적으로 높아짐
 - 당분간 하방 위험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된다면 성장에 영향을 미쳐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
 - 7월 말 발표 예정인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세계경제성장률 또한 2022년과 2023년 모두 추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우선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첫째, 각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함
 - 둘째,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중앙은행을 도와야함
 - 셋째,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중요함. 식량 불안정과 높은 부채에 의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히 G20의 리더십이 필요함



■ 우크라이나의 회복 및 재건에 대한 회의 개최 (2022. 7. 4.~5.)¹⁸⁾

- ‘우크라이나의 회복 및 재건(The OECD and Ukraine's recovery and reconstruction)’을 주제로 6가지 주요 정책 제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우크라이나의 경제회복, 인프라 복구, 포용적 회복을 위한 사회정책, 공공 거버넌스,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디지털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환경적 영향과 녹색재건에 대한 전망을 발표¹⁹⁾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대한 OECD의 정책 제언: 우크라이나의 경제회복(Shaping the path to economic recovery)(2022. 7. 1.)²⁰⁾

- (개요)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단기 조치, 거시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조치를 제시하고 투자환경 및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지원,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
- (현황)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산 자원을 약화시키고 있음
 - (경제 일반) 2022년 손실된 생산능력 및 경제활

17) IMF Managing Director Kristalina Georgieva Urges G20 Leadership to Address ‘Exceptionally Uncertain’ Global Outlook,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7/16/pr22261-md-g20-statement>, 검색일자: 2022. 7. 18.

18) <https://www.oecd.org/country/ukraine/#rebuilding-ukraine>

19) 정책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연구보고서 참조, <https://www.oecd.org/ukraine-hub/en/#resources>, 검색일자: 2022. 7. 18.

20) OECD,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대한 OECD의 정책 제언: 우크라이나의 경제회복, ‘Shaping the path to economic recovery,’ 2022. 7. 1., <https://www.oecd.org/ukraine-hub/policy-responses/shaping-the-path-to-economic-recovery-78475265/>, 검색일자: 2022. 7. 18.



동은 전쟁 전 대비 30~50% 수준으로 추정(우크라이나 기업의 거의 절반이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 수출량 역시 1/2 수준으로 감소

- (농업) 전 세계 곡물 수출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022년 봄 경작한 농작물이 평년대비 약 70% 수준이었으며, 농업 비축량이 손괴되어 전 세계적으로 식량공급이 위태로워지고 있음

• 2020년 우크라이나의 듀럼밀(durum wheat)과 메슬린(meslin), 밀 수출 시장점유율은 전 세계 5위 이내에 해당하며, 식물성 기름(해바라기씨유 등)의 시장 점유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남²¹⁾

- (무역) 연료와 같은 핵심 품목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했지만 수출 대비 적게 감소하여 경상수지 자금 조달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음

- (물가) 2022년 4월까지 물가가 16% 이상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음

- (재정) 전쟁 발발 이후 세수는 80% 감소하고 매월 약 47억유로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앙은행 또는 공식적인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4일에서 2022년 6월 7일 사이 주로 인도주의적 보조금 명목으로 79억달러 이상, 대출 및 기타 자금으로 494억달러 이상을 지원받았음

- (자금 조달) 2022년 6월 초 이후 우크라이나

는 국제 파트너로부터 280억유로 이상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는 정부자금조달을 위한 다자간 지원을 포함함

• EU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Rebuild Ukraine Facility)

• IMF 관리의 우크라이나 계정(Account for Ukraine)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20억유로 규모의 회복 및 생계 프레임워크(Resilience and Livelihoods Framework)

•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다중기부 지원(multi-donor facility)

• (정책 대응 방안) 우크라이나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대응이 필요

- 현재 즉각적인 재정 및 경상수지 회복에 필요자금이 조달된 상태이며, 단기적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은행 시스템과 환율에 대한 신뢰 유지가 필요

- 중장기적(2023년 이후)으로 손실된 생산능력과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며, 재건을 위해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유입의 균형적 분배가 필요

• 근로자의 기술 향상 및 기업의 노동수요를 해결하고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재건 등을 통한 우크라이나 노동시장 정책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투자유치 및 지속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 요구됨

21) OECD, 2022년 6월 경제전망, Box 1.1 참조,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 7. 21.;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2.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인구가동으로 이어져 영구적 기술 상실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발, 근로자의 기술 향상, 전쟁 이전에 진행되었던 공공고용서비스인 취업 연결 프로그램 향상에 중점을 두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 또한 민간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회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반독점위원회(AMC)의 역할 강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예산처(CBO), FY2023 대통령 예산안에서 제시한 재량지출 전망 분석 보고서 발표(2022. 7. 1.)²²⁾
 - (재량지출 총 규모) CBO에서 분석한 FY2023 재량지출(권한) 요청 규모는 전년 대비 2%(380억 달러) 감소한 1.71조달러 전망
 - 감소되는 재량지출의 대부분은 의무지출로 전환(330억달러)되는 재량지출 프로그램에 기인
 - (기준선 전망과의 비교) CBO에서 분석한 FY2023 대통령 예산안의 재량지출권한 규모는 1.7조달러로 5월 기준선 전망 수치(1.8조달러) 대비 약 1천

억달러(5.7%)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국방예산) CBO에서 분석한 FY2023 대통령 예산안의 국방 분야 재량지출권한 규모는 전년 대비 2%(170억달러) 증가한 8,130억달러 전망
 - 국방 분야 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국방 관련 R&D 자금(9%; 110억달러)과 인건비(4%; 70억달러)의 증가가 언급되고 있음
- (비국방예산) CBO에서 분석한 FY2023 대통령 예산안의 비국방 분야 재량지출권한 규모는 전년 대비 5.8%(550억달러) 감소한 8,920억달러 전망
 - 비국방 분야 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상업·주택신용(△570억달러), 천연자원·환경(△380억달러) 예산의 감소가 언급되고 있음

[기타]

- 의회예산처(CBO), 연방 신용프로그램(Federal Credit Programs) 비용 추정 보고서 발표(2022. 6. 24.)²³⁾
 - (프로그램 구분) 연방 신용(대출 및 대출보증 등) 프로그램은 총 118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 중 CBO에서 분석 편의를 위해 크게 4개 (① 주택·부동산 대출, ② 상업 대출, ③ 학자금 대출, ④ 소비자 대출) 프로그램으로 구분
 - (신용 규모) 2023 회계연도에 이행될 대출 및 대출보증 규모는 약 22조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주택·부동산 신용 규모가 가장 큰 비중(88%)을 차지

22)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7972>, 검색일자: 2022. 7. 13.

23)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8031>, 검색일자: 2022. 7. 19.



- (생애 비용) 2023 회계연도에 신규 이행될 대출 및 대출보증의 생애비용(lifetime costs)은 일반적인 연방여신 기준(FCRA²⁴)으로는 411억달러 흑자가 추정됨
 - 시장가치(market value)가 반영된 공정가치(fair-value)로 측정할 경우 약 511억달러의 적자 발생
 - 공정가치로 측정한 신용프로그램 비용 비중(subsidy rate)은 연방여신 기준(FCRA) 수치 대비 평균 4.2%p 높게 나타남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 7. 13.)²⁵

- (전반적인 경제활동) 5월 이후 경제활동은 균형적으로 성장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료품과 유류 가격 상승으로 소비 지출이 감소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 후퇴의 우려를 보임
 - 接客 및 여가 분야는 사업 및 단체 여행의 상승세가 있었으나 제조업은 공급망 붕괴와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음
 - 비금융 서비스 분야는 수익이 예상을 초과했으나, 주택수요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고, 상업용 부동산도 시장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임
- (노동시장)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시장

여건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어려움

-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는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 가용성(labor availability)이 다소 개선된 경향을 보임

- (물가)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목재와 철강 분야에서는 조정(moderation)이 있었음
 - 기업들은 소비자의 반발 없이 큰 규모의 비용을 전가했고, 대부분 지역에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표 발표(2022. 7. 13.)²⁶

-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U)이 전년 동월 대비 9.1%로 집계됨
 -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8.6%)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은 1.3%로 5월(1.0%)에 비해 증가해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대부분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음

24) Federal Credit Reform Act of 1990(FCRA)는 1990년에 도입된 연방여신개혁법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연방예산상의 신용 측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25) Fed, *Beige Book - July, 2022*, 2022. 7. 1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7.htm>, 검색일자: 2022. 7. 18.

26)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June 2022*, 2022. 7. 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 7. 19.; 백악관, *President Biden Statement on CPI Inflation in June, 2022*, 2022. 7. 1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7/13/president-biden-statement-on-cpi-inflation-in-june/>, 검색일자: 2022. 7. 19.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2022. 7. 27.)²⁷⁾

- FOMC 참석자(participants)²⁸⁾들은 7월 26~27일 개최된 FOMC 회의²⁹⁾에서 최근 소비와 생산 지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세가 강했음을 언급함
 -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관련 공급 및 수요 불균형으로 인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포함해 광범위한 물가 압력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쟁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함
- 위원(member)³⁰⁾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7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경제 상황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1.50~1.75% 수준에서 2.25~2.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일본

[예산·결산 등]

- 내각부,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 2차 회의 개최(2022. 7. 15.)³¹⁾
 - (개요) 내각부 산하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³²⁾ 회의에서 물가 급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초래한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
 - (물가 동향) 2022년 5월 전년 동월과 비교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2.5%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는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월도 동일하게 2.5%를 기록함
 - (국제 비교) 일본은 휘발유 가격 급등 완화 사업, 전기요금 조정 조치, 밀 국내 가격 상승 억제 정책 등을 통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함
 - G20 국가의 절반 정도가 7% 이상의 물가 상

27)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 7. 27.,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727a.htm>, 검색일자: 2022. 7. 29.

28)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29) 베이지북 6월호를 참고 바람

30)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31) 내각부, 第2回 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 開催, 2022. 7. 15., <https://www.cas.go.jp/jp/seisaku/bukka/index.html>, 검색일자: 2022. 7. 18.; 수상관저, 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 2022. 7. 15.,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207/15taisakuhonbu.html, 검색일자: 2022. 7. 18.

32)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는 유가 및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빠른 대응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확실하게 이뤄내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신설됨.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내각부 산하에 설치함. 1차 회의는 2022년 6월 21일에 개최되었음



승률을 보였으나, 일본은 하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국제 협력)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 설정·준수 및 수입 금지 등과 우크라이나 밀 수출 재개 지원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이 논의됨을 알림
- (정책 대응) 1조엔 규모의 지방창생임시보조금을 이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지원과 주요 물가 상승 요인*인 에너지 및 식료품에 집중 대책을 진행하고 있음

* 소비가 물가 상승은 주로 에너지(약 50%), 신선식품(약 20%),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약 20%)에 기인함

- (개인) 저소득자 대상 전기료 등 에너지가격 상승분 한시적 지원, 학교급식 식자재비 지원, 연료비 조정 제도 등에 따른 전기 및 가스 일부 요금 상한 설정, 장기 계약을 통한 LNG 조달 등
- (사업자) 전기 등 요금 급등에 대응한 에너지 요금 보조 및 산업 지원, 수산·시설원에·축산 등 경영 지원
- (에너지) 휘발유 등 연료 보조금 지원,³³⁾ 지방 창생임시보조금을 활용한 전기요금 지원, 절전

프로그램³⁴⁾을 도입하여 절전을 유도(7월 11일부터 집행단체 공모)

- (식료품) 화학비료 20% 저감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자에게 비료가격 상승분의 70%를 보전하는 등 생산비용 감소를 위한 새로운 지원금 마련, 비료 조달 국가 다각화, 밀 가격 상승의 억제 9월까지 연장 등
- (임금) 올해 전국 평균 1천엔 이상의 최저임금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이번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내고자 함



독일

[예산·결산 등]

- 연방 내각, 202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채택 (2022. 7. 1.)^{35), 36), 37)}
 - (안정지향적 재정정책으로의 복귀) 예외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지난 3년간 부채규정 기준

33) 올해 1월부터 연료 격변 완화 대책을 시행했으며, 휘발유의 경우 4월부터 전국 평균 리터당 가격이 168엔 이상될 경우 1리터당 25엔에서 35엔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35엔 이상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초과분의 1/2를 지원함. 1월 하순 이후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170엔 전후의 추이를 보임(지원 조치가 없을 경우 6월 휘발유 예상가격은 리터당 210엔 내외)

34) 절전에 참여하는 경우 포인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절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일을 등록한 가정이나 기업에 일정액의 포인트 등을 부여하고(가정용 등록 시 2천엔), 가을 이후 날씨로 인한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전력회사 포인트에 더해 정부에서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함

35) 연방 재무부, "Haushaltentwurf 2023 beschlossen: Weichenstellung für eine höhere Resilienz der öffentlichen Finanzen," 2022. 7. 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Bundeshaushalt/2023/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3.html, 검색일자: 2022. 7. 4.

36) 연방 재무부, "Staatsfinanzen stabilisieren, Zukunftsinvestitionen ausbauen, fiskalische Resilienz stärken," 2022. 7. 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7/2022-07-01-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3.html>, 검색일자: 2022. 7. 4.

37) 연방정부, "Für eine zukunfts- und handlungsfähige Finanzpolitik," 2022. 7. 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kabinett-bundeshaushalt-2023-2058762>, 검색일자: 2022. 7. 4.

한도³⁸⁾를 넘겨왔으나 2023년부터는 재정정책의 전환점으로써 부채 한도를 지키며 안정지향적인 재정정책으로 돌아갈 계획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기후 보호, 교통, 디지털화, 혁신,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경제전망) 독일 경제는 계속되는 원자재 공급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22년 4월 27일 발표된 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 경제성장률은 2.2%로 2022년 3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2022년 전년도에 비하여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고정자본형성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여행 및 관광의 재개의 영향으로 2022년 전년 대비 5.5% 증가하고, 수출은 원자재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3년에는 2.5%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2024~2026년 기간 동안 연간 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2023년 재정지출은 4,452억유로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한 수치, 재정지출은 2024년까지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세입은 2023년 전년 대비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으로 인하여 예측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2021년 마스트리히트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69.3%로 2020년의 68.7%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2022년부터 다시 줄어 GDP의 66.75%에 이를 것이며 전망기간 동안 64.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3년부터는 부채 한도를 준수함으로써 신규차입액이 2022년 약 1,400억유로에서 2023년에는 172억유로로 줄어들고, 2024~2026년 기간 동안에도 평균 130억유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 2014년 수준으로 인상된 금리로 인하여 이자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2023년 이자지출액은 봄에 예측한 금액보다 120억 유로 이상 많은 3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2023 예산안 및 2024~2026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구분	2022	2023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4	2025	2026
재정지출	4,958	4,452	4,237	4,286	4,363
전년대비 증가율(%)	-10.9	-10.2	-4.8	1.2	1.8
재정수입	4,958	4,452	4,237	4,286	4,363
조세수입	3,284	3,623	3,745	3,881	4,023
신규차입	1,389	172	123	128	138
투자지출	515	584	517	521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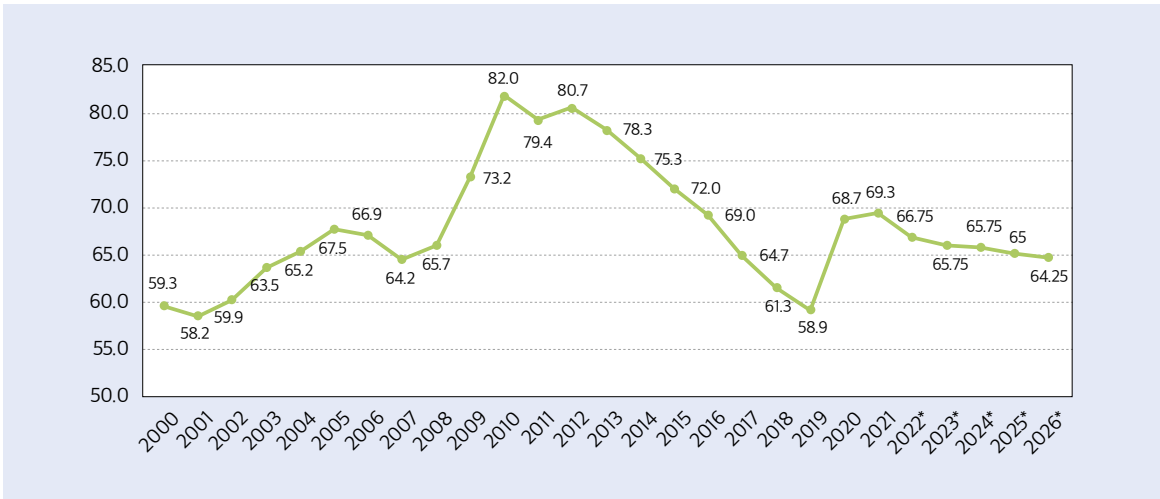
출처: 연방 재무부, *Bundeshaushalt 2023*, p. 4., 2022. 7. 1.

38) 독일 기본법 109조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는 차입 수입 없이 예산의 균형을 이뤄야 하며, 기본법 115조는 신규 차입을 명목 GDP의 최대 0.35%로 제한하고 있음



[그림 3] 독일 국가채무 추이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2. 2022~2026년 전망

3. * Projektionsstand: Stabilitätsrat; April 2022

출처: 연방 재무부, Bundeshaushalt 2023, p. 5., 2022. 7. 1.

- (주요정책) 독일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되돌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투자에 많은 지원을 할 계획
- 독일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기후중립적이며 디지털화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 계획 기간 동안 연간 약 520억유로 규모의 투자 지출을 할 계획
-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2천억유로 이상을 지출할 계획
 - 연금보험에 대한 지출은 2023년 1,124억유로에서 2026년 1,288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이며, 유아교육에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0억 유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주택에 대한 연방의 주정부 재정 지원도 25억유로로 크게 증가
- 연방정부는 불확실성이 강한 환경에서 행동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

- 에너지 공급 확보에 54억유로, 글로벌 위기 대책에 50억유로, 코로나19 백신조달에 22억 유로 제공
- 국방,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및 국제 기후 보호 분야에 기금을 제공하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 국제 기후 및 생물 다양성 기금에 2023년에만 40억유로를 기여할 것이며, 세계 2위의 공여국으로서 개발 협력에 연간 220억유로 이상을 지출할 계획

[기타]

- 연방 하원, 전력 부문의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체 발전소 사용 법안 승인(2022. 7. 14.)^{39), 40)}

-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독일 정부는 러시아 가스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며, 겨울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스 저장량을 확보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
-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에너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석탄 및 석유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킴
 - 대기상태로 관리되고 있던 4.3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소 및 1.6기가와트 규모의 석유 발전소를 예비 전력망에 포함시킴
- 동시에 가스 소비를 줄이면서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도 시행
 - 가스 경매 모델을 도입하여 산업용 가스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THE(Trading Hub Europe GmbH)⁴¹⁾의 지역 관리자에게 가스저장시설을 채울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보증한 150억유로 신용한도를 독일개발은행(KfW)을 통해서 지원
-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연방 경제 기후부와 연방 환경·소비자보호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아직까지 가동 중인 원전 3기는 계획대로 2022년 말 폐쇄될 예정⁴²⁾

- 연방정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위한 50억유로 지원 프로그램 발표(2022. 7. 14.)⁴³⁾
- 연방 경제기후부와 연방 재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위한 에너지 비용 경감 프로그램을 발표함
 - 에너지 및 무역 집약적 기업은 천연가스 및 전기요금에 대하여 최대 5천만유로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프로그램의 총 예산규모는 최대 50억유로
 - 독일은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함께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임시위기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 - TCF)⁴⁴⁾”를 활용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
- 2021년 평균 가격에 비해 천연가스 및 전기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면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추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

39) 연방 경제기후부, “Habeck: Wir stärken die Vorsorge weiter und ergreifen zusätzliche Maßnahmen für weniger Gasverbrauch,” 2022. 6. 1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6/20220619-habeck-wir-staerken-die-vorsorge-weiter.html>, 검색일자: 2022. 7. 18.

40) 연방정부, “Weniger Gasverbrauch im Ernstfall,” 2022. 7. 1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klimaschutz/gasersatzreserve-2048304>, 검색일자: 2022. 7. 18.

41) THE(Trading Hub Europe GmbH)는 11개의 장거리 가스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회사이며, 독일 시장 지역을 책임지고 있음. 법적으로 허가된 독점 과제를 수행하며 에너지산업법(EnWG) 개정 이후, 가스 저장 시설을 필요에 따라 채우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42) 연방 경제기후부, “Atomenergie auf dem Prüfstand,” 2022. 4. 27., <https://www.bmwk.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2/05/12-atomenergie-auf-dem-pruefstand.html>, 검색일자: 2022. 7. 21.

43) 연방 재무부, “5 Milliarden Euro Hilfsprogramm für energieintensive Industrie startet,”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7/2022-07-14-hilfsprogramm-energieintensive-industrie-startet.html>, 검색일자: 2022. 7. 18.

44) 2022년 3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임시위기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 - TCF)’를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보상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보장하며, 예외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출처: European Commission, “Temporary Crisis Framework,” https://ec.europa.eu/competition-policy/state-aid/ukraine_en, 검색일자: 2022. 7. 20.)



프랑스

■ FY2022 1차 수정예산법안(PLFR: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 발표(2022. 7. 8.)⁴⁵⁾

-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지원을 위해 편성
- 2022년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율은 5.5%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85년 이후 최고 수준

- (경제전망)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 상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2.5%로 2022년 예산법의 예측치인 4%에서 하향조정
- (재정전망)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의 재정적자는 1,685억유로로 2022년 예산법 대비 146억유로 감소하였으나 2021 회계연도 대비 23억유로 증가

<표 5> FY2022 1차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결산 (A)	2022 예산법 (B)	2022 PLFR (C)	(C-A)	(C-B)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88.5	461.5	505.7	17.2	44.2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18.8	391.9	436.1	17.3	44.2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9.7	69.6	69.6	-0.1	0.0
재정수입(Recettes de l'État)	317.0	307.7	338.9	21.9	31.2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95.7	287.6	315.2	19.4	27.6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78.7	82.4	315.2	19.4	27.6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6.3	40.0	56.8	10.5	16.8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	18.3	18.2	18.1	-0.3	-0.1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5.5	98.4	104.8	9.3	6.5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56.9	48.6	50.2	-6.7	1.5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1.3	20.2	23.7	2.5	3.6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0.8	-0.1	-1.7	-2.5	-1.6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0	0.0	0.0
총재정수지(Solde État)	-170.7	-153.8	-168.5	2.3	-14.6

출처: 프랑스 국회,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PLFR 2022)

45) 프랑스 예산국, PLFR 2022 -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2022., <https://www.budget.gouv.fr/calendrier-budgetaire?date=202207#actu-16276>(https://www.budget.gouv.fr/files/files/plfr/2022/PLFR1_2022-W.PDF), 검색일자: 2022. 7. 20.

-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구매력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반 예산 지출이 442억유로 증가함
- (재정수입)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의 순세수는 2022년 예산법 대비 276억유로 상향 조정된 3,152억유로로 예상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인한 수입이 각각 30억유로, 65억유로 증가하고 2022년 5월에 징수된 법인세의 수입도 168억유로 증가함
- (지원조치) 인플레이션 상승에 직면한 가계 구매력을 지원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
 - 프랑스 구매력 보호 법안을 통해 연료수당 신설, 장학금 및 공무원 임금 인상, 유류비 지원 연장, TV시청료 폐지 등을 시행함
 - 에너지 전환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조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도 포함됨

기타

- 프랑스 정부, 프랑스 구매력 보호 법안 발표(2022. 7. 7.)⁴⁶⁾
- 에너지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서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운영 중인 대책과 신규 정책을 포함한 법안을 발표함
 - (연료 수당) 10월 1일부로 근로자 1인당 100~

- 300유로의 연료수당 지급
 - 4월 1일부터 시행한 연료가격 지원(10월 리터당 12센트, 11월 리터당 6센트, 12월 1일 종료)은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폐지에정이며, 소득수준 및 가구구성에 따라 100~300유로의 연료수당을 지급할 예정
 - 연료수당에는 직장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업무적인 이유로 연간 1만 2천km 이상 주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됨
- (장학금 인상) 2022학년도부터 장학금은 4% 인상되며, 1유로 급식제도는 2023학년도까지 유지
- (특별 상여금 면세) 2019년에 도입된 특별 상여금 면세 금액을 3배로 확대
 -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세되는 특별 상여금은 개인 1천유로 → 3천유로, 회사 2천유로 → 6천유로로 확대
- (자영업자의 사회보장기여금 축소) 자영업자들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축소하고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엔 납부 의무 면제
- (임대료 인상 제한) 10월 15일부터 1년간 임대료 인상폭 최대 3.5% 제한⁴⁷⁾
- (연료가격 유지) 2021년부터 시행된 연료가격 유지 조치를 2022년 말까지 유지
 - 전기요금 인상 4% 제한 및 가스가격 동결 조

46) 프랑스 정부, Protéger le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2022. 7. 7., <https://www.gouvernement.fr/dossier-de-presse/protoger-le-pouvoir-dachat-des-francais>, 검색일자: 2022. 7. 18.

47) 2022년 상반기 재정동향 임대료 인상제한(bouclier loyer) 발표(2022. 6. 27.) 참조



- 치를 연말까지 유지
- (연금 및 사회복지급여 인상) 사회적 혜택을 재평가하여 4% 인상
 - 퇴직연금, RSA, 가족수당 및 장애수당 등을 재평가하여 4% 인상하고 맞춤형 주택지원 (APL)은 3.5% 인상
- (푸드체크 지원) 저소득 가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유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보조금 대상자, 장학생 등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며 부양자녀당 50유로가 추가로 지급됨
- (TV 시청료 폐지) 프랑스 본토 138유로, 해외 88유로 상당의 시청료 폐지
- (공무원 임금 인상) 급여회의의 결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임금 3.5% 인상

■ 마크롱 대통령, 에너지 절감 계획 발표(2022. 7. 18.)⁴⁸⁾

- 엠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7월 14일 연설에서 전쟁 관련 에너지 부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계획을 발표
 - 향후 2년 동안 에너지 소비(연료, 천연 가스, 전기)를 2019년 대비 10%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4가지 전략을 수립
 - 에너지 소비 축소

- 에너지 효율화
-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 프랑스 원자력 부문 재활성화
- 모든 공공 및 민간 참여자로 이루어진 총 5개의 실무 그룹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협의 결과 및 운영방안 등은 9월말에 발표될 예정임



영국

■ 예산책임청(OBR), '2022 재정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발표(2022. 7. 7.)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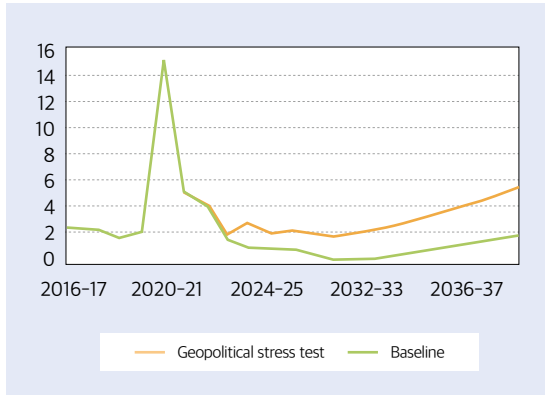
- (개요) 예산책임청은 기존에 격년으로 발간하던 '재정 리스크 보고서'와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2022년에는 하나의 연례 보고서로 통합하여 발표함
- (지정학적 갈등)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 안보와 글로벌 경제 통합에 대한 위협이 실현되면 재정전망이 악화될 수 있음
 - (① 국방지출 시나리오) FY2036-37의 국방 지출 수준을 GDP의 1%(2차 대전 이후 추세), 2%(NATO 약속)로 가정 시 지출이 각각 270억, 20억파운드 절감되나 3%(NATO 내 2위),

48) 프랑스 정부, Ce qu'il faut savoir sur le plan « sobriété énergétique », 2022. 7. 18.,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ce-quil-faut-savoir-sur-le-plan-de-sobriete-energetique>, 검색일자: 2022. 7. 20.

49)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2022. 7., https://obr.uk/docs/dlm_uploads/Fiscal_risks_and_sustainability_2022-1.pdf, 검색일자: 2022. 7. 12.; _____, 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speaking notes, 2022. 7. 7., https://obr.uk/docs/dlm_uploads/FRS2022_presentation_speaking_notes.pdf, 검색일자: 2022. 7. 12.

[그림 4] 공공부문 순차입(지정학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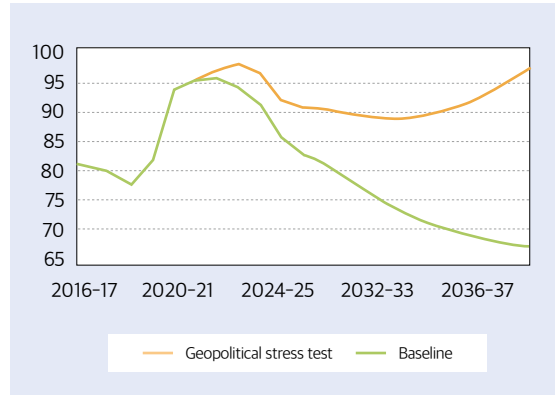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July 2022*, 2022. 7., chart 2.24.

[그림 5] 공공부문 순채무(지정학적 갈등)

(단위: GDP 대비 %)



출처: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July 2022*, 2022. 7., chart 2.25.

4%(냉전 시기 수준)로 가정 시 240억, 490억 파운드 추가 소요

- (②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중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해에는 GDP 대비 1.6%의 충격과 290억파운드의 추가 정부 차입이 발생
- (③ 글로벌 경제 분절화 시나리오) 무역 긴장이 세계 무역 전쟁으로 진전될 경우 세계 교역 규모가 17% 감소하고 FY2036-37까지 정부 차입 비율은 GDP 대비 2.3% 상승, 채무 비율은 20% 이상 상승
- (스트레스 테스트⁵⁰⁾ 결과) 다수의 리스크들이 동시 실현되면 FY2036-37에 공공채무는 기준선 전망 대비 GDP의 약 28% 상승(주로 보

호 무역 강화로 인한 세계 경제 분절화의 영향)

-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변동) 영국의 탈탄소화 목표를 고려해 화석 연료가격 상승(중기)과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변화(장기)의 재정적 리스크를 평가함
- (화석 연료가격 상승) 화석 연료가격의 '일시적 급등 시나리오⁵¹⁾'에서 차입이 FY2023-24에 300억파운드(GDP의 1.2%), 채무가 FY2026-27까지 630억파운드(GDP의 1.8%) 추가되고, '지속적 충격 시나리오⁵²⁾'에서 차입은 FY2023-24에 170억파운드(GDP의 0.7%), 채무는 FY2026-27까지 500억파운드(GDP의 2.2%) 추가됨

50) ① 2020년대 중반 중대 사이버 공격 발생, ② 전통적 안보 위협 증가로 2030년대 중반까지 GDP의 3%로 국방 지출 증가, ③ 세계 무역 전쟁으로 인해 향후 15년간 국경 간 교역 및 투자 감소를 가정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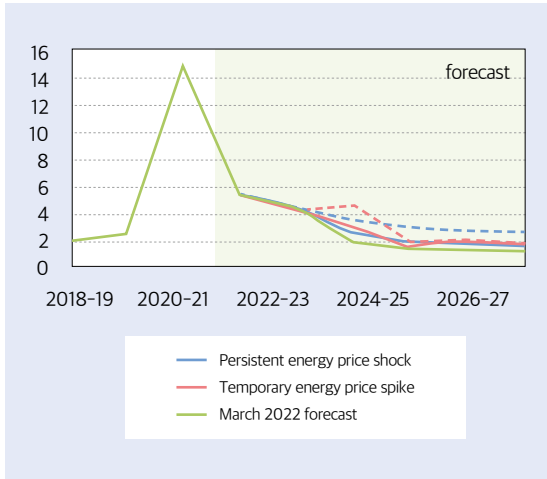
51) 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1섬(therm)당 7파운드(3월 전망의 두 배 이상 상승), 유가는 배럴당 147달러로(21세기 최고 수준) 상승 후 2025년까지 3월 전망에서 가장한 수준으로 다시 하락

52) 첫 2년간 가스가격은 1섬당 3파운드, 유가는 배럴당 147달러로 상승하여 유지되고 이후 실질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



[그림 6] 공공부문 순차입(에너지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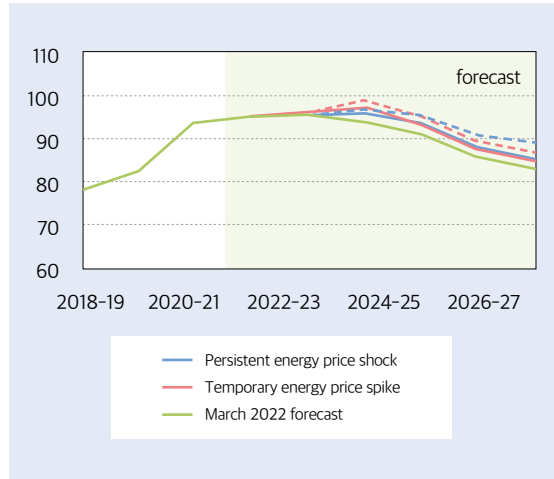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주: 점선은 정부 지원 확대 효과를 포함
출처: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July 2022*, 2022. 7., chart 8(좌).

[그림 7] 공공부문 순채무(에너지가격 상승)

(단위: GDP 대비 %)



주: 점선은 정부 지원 확대 효과를 포함
출처: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July 2022*, 2022. 7., chart 8(우).

- (에너지 믹스 변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별로 잠재적 비용이 소요되고, 화석 연료가격 상승 및 사용 감소로 관련 정부 수입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가 감소할 수 있음

- 유가 상승은 화석 연료 운영비용을 높여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한계 비용을 줄이고 화석 연료에서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고
- 배출권 거래제, 기타 탄소세 등 가스 사용으로 창출되는 정부 수입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가 탄소세를 확대하지 않고 보조금과 규제에 더욱 의존한다면 재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임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 더 많은 정부의 투

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천연가스 사용 확대 시 탄소 포집·저장 인프라에 원자력 발전 확대 시 신규 원전 건설·해체 비용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 시 간헐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저장 용량에 더 많은 공공투자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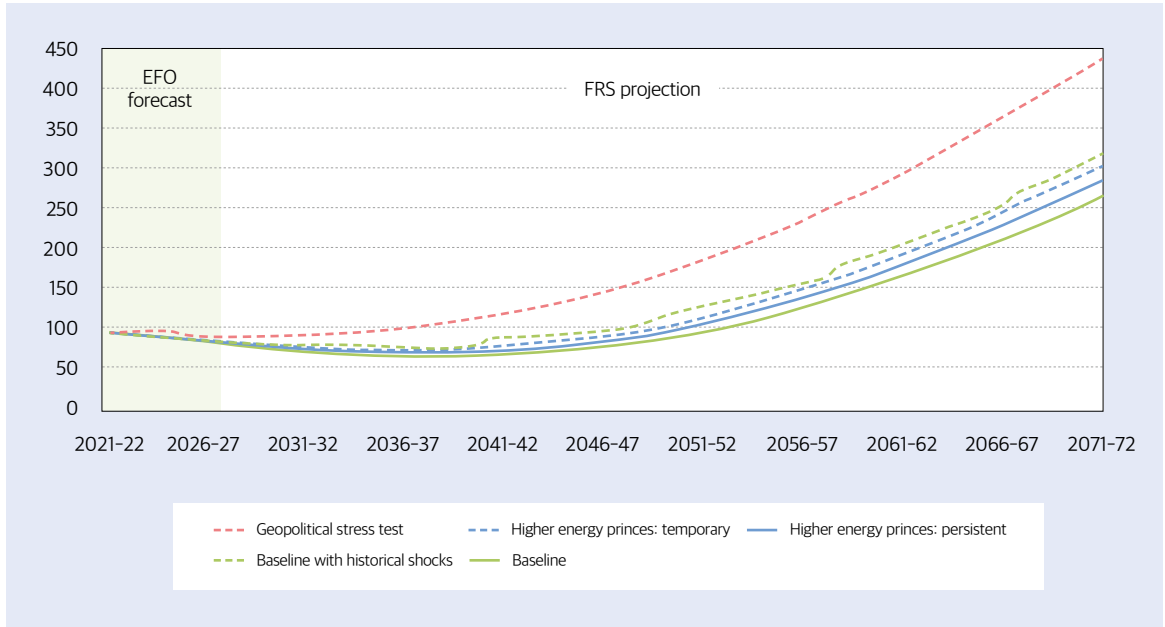
- (재정 장기 지속가능성)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6-27에 84%에서 FY2052-53에 100%를 상회하고, FY2071-72에 267%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로가 나타날 전망

* 팬데믹 이후 조세 증대에 따른 기초적 재정수지 개선, 인구 전망 변화(출생률 감소, 인구 순유입 감소, 기대수명 개선 둔화), 휘발유차 단계적 폐지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 기타 경제·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장기 재정전망을 업데이트함

- 의료, 사회적 돌봄, 연금 등의 지출 증가와 자동차세 등 수입 감소로 FY2026-27~FY2071-72 사이에 기초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약 11.4% 악화

[그림 8] 장기 공공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July 2022*, 2022. 7., chart 1.

- 또한 에너지 가격 쇼크 시나리오는 GDP의 약 300%로, 지정학적 갈등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나리오는 GDP의 400% 이상 수준까지 FY2071-72의 채무가 더욱 상승
- 채무를 GDP의 7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세 증대, 지출 축소 등으로 향후 50년 동안 매 10년마다 GDP의 1.5% 규모(약 370억파운드)의 추가 긴축이 필요

재정포럼

2022년 8월호 통권 제314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22년 8월 16일 발행 / 제26권 제8호(통권 제31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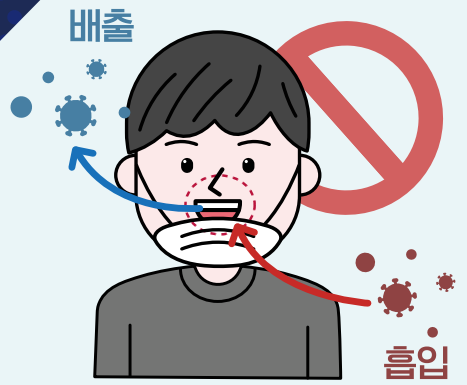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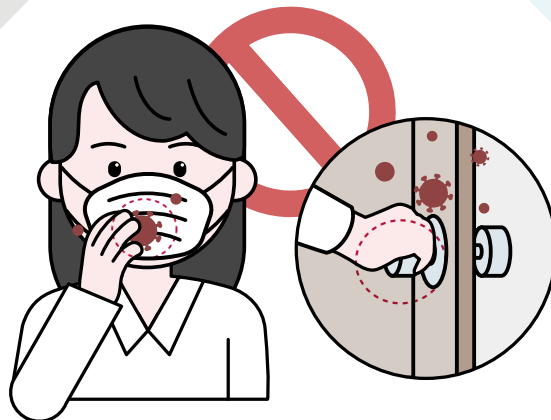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 01 아르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2020. 05. 06.

- 01 아르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2022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기농산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기농산물

2022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기농산물

월간

재정포럼

2022. August_Vol.314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8

권두칼럼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재정 | 장용성

현안분석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 박노옥

특집

2022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배정훈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 정다운

정책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 소비와 인구구성을 중심으로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논의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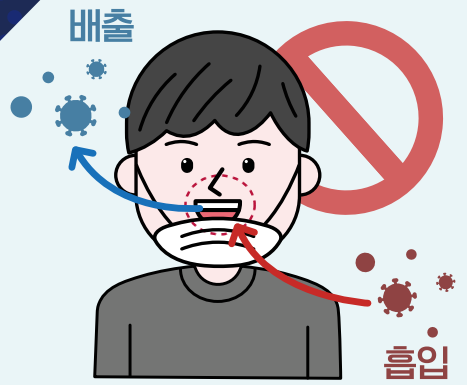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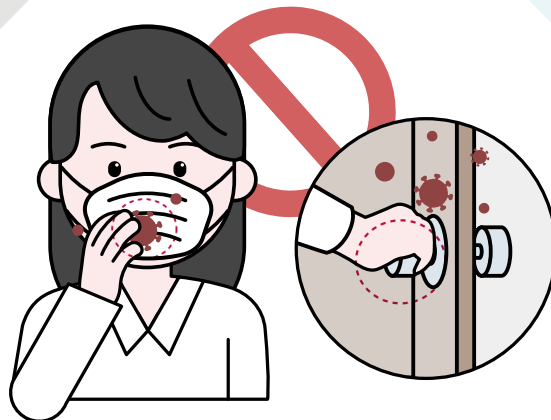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